

2007. 9. 6 ~ 9. 11

제138회 임시회

# 시정질문 답변서

제 천 시

#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38회 재천시의회 임시회)

| 일 시          | 의원명        | 질 문 내 용   | 답 변 자                                | 비 고    |
|--------------|------------|---|--------------------------------------|--------|
| 계            | 2명         | 7건  |                                      |        |
| 9. 10<br>(월) | 박성하<br>성명중 | 1.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 놀이시설에 대하여?<br>2. 하수, 우수관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br>3. 제천시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br>4. 공사관련 지출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 부 시 장<br>미래경영본부장<br>부 시 장<br>미래경영본부장 | ①<br>② |
| 9. 11<br>(화) | 박성하        | 5. 팀제 개편에 대하여?<br>6.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br>현황은?<br>7. 제천시 쓰레기 수거현황 및 대책은?  | 시 장                                  | ①      |

## 답변서

|      |                         |
|------|-------------------------|
| 질문의원 |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
| 답변자  | 부시장 김재갑                 |
| 제목   |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에 대하여 ? |

### 질문요지

- 제천시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놀이시설 2년간 점검현황은?
- 모래 교체 및 소독 실적은?
-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의 안전대책은?

### 답변내용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성하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제천시 각종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영업용포함)의 2년간 점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붙임자료 참조 바랍니다) -
- 우리시의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총 31개소에 63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 공원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28개소 46종의 시설로 도시관리팀에서 수시점검 및 매년 상.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후 예산에 반영 정비 및 보수를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여성 유소년팀에서 연중 상.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비, 보수토록 하고 있으며
- 영업용 공원시설은 일반 유원시설업 2개업소(의림지파크랜드 의림지놀이동산), 기타 유원시설업 1개업소(스카이랜드) 등 3개소로서 연 1회이상 유원시설협회에서 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팀에서 연중 상.하반기(명절 행락 성수기 등) 각 1회씩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모래 교체 및 소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공원내 놀이터 그네가 설치된 곳의 바닥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래를 부설한 관계로 소독 등은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그네 및 놀이시설 등 주변의 파인 곳은 발견 즉시 모래 등으로 평탄작업을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원 시설업소의 바닥은 아스콘 포장 및 소형 고압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염성 질환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업소 자율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어린이 놀이시설에 의한 안전 사고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수칙 표기, 놀이시설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를 의무화 하고

-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부품사이의 간격을 틈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규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 제천시도 이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 아울러 유원시설 업체는 관광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각1명씩(의림지파크랜드 : 원영성<안전관리자>), (의림지놀이동산 : 김준경<안전관리자>), (스카이랜드 : 박숙자<운영자>)의 안전관리자 및 운영자를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 이상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놀이 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시설명        | 소재지                  | 놀이시설 현황    | 비고 |
|------------|----------------------|------------|----|
| 계          | 31개소                 | 63종        |    |
| 중앙공원       | 중앙로 2가 26-1(아사봉)     | 미끄럼틀       |    |
| 고암 제1어린이공원 | 고암 1168-7(부강APT 내)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교동 제1어린이공원 | 교동 92-1(동사무소 앞)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교동 제2어린이공원 | 교동 40-23(제천향교 옆)     | 조합놀이대      |    |
| 동현 제1어린이공원 | 동현 281(세경APT 앞)      | 조합놀이대      |    |
| 서부 어린이공원   | 서부 945(정안주택 뒤)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신월 제1어린이공원 | 신월 1276(부영APT 옆)     | 조합놀이대      |    |
| 신월 제2어린이공원 | 신월 1403(부영APT 뒤)     | -          |    |
| 신월 제3어린이공원 | 신월 1355(우영APT 앞)     | 조합놀이대      |    |
| 왕암 제1어린이공원 | 왕암 866(현진에버빌 옆)      | 조합놀이대      |    |
| 영천 어린이공원   | 영천 257-250(철도관사 내)   | -          |    |
| 영천 제1어린이공원 | 하소 209-3(신당공원 북쪽)    | -          |    |
| 영천 제2어린이공원 | 영천 211-1(신당공원 남쪽)    | -          |    |
| 영천 제3어린이공원 | 영천 888(임광하이츠 뒤)      | 조합놀이대      |    |
| 장락 제1어린이공원 | 장락 788(색동유치원 옆)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장락 제2어린이공원 | 장락 1027(주공2단지 내)     | 그네         |    |
| 청천 제2어린이공원 | 청천 592(한양유치원 앞)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청천 제3어린이공원 | 청천 583-1(원불교 밑)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청천 제4어린이공원 | 청천 652(보건소 뒤)        | 조합놀이대      |    |
| 청천 제6어린이공원 | 청천 791(곤지곤지선교원 앞)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청천 제7어린이공원 | 청천 497-25(광진사인빌 뒤)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하소 제1어린이공원 | 하소 107(현대APT 101동 옆)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하소 제3어린이공원 | 하소 354(하소주공 204동 옆)  | 조합놀이대      |    |
| 하소 제4어린이공원 | 하소 348(하소주공 4단지 옆)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화산 제1어린이공원 | 화산 416(문화회관 옆)       | -          |    |
| 화산 제2어린이공원 | 화산 801(종합운동장 앞)      | 그네 미끄럼틀 시소 |    |
| 화산 제3어린이공원 | 화산 801(제천역 앞)        | 조합놀이대      |    |
| 화산 제4어린이공원 | 화산 939(무궁화APT 앞)     | 조합놀이대 2개   |    |
| 의림지파크랜드    | 모산 236-1(대표 이청자)     | 회전목마외 5종   |    |
| 의림지놀이동산    | 모산 233-3(대표 김준경)     | 바이킹외 6종    |    |
| 스카이랜드      | 청천 56-12(대표 박숙자)     | 트램블린외 3종   |    |

## 답변서

|      |                            |
|------|----------------------------|
| 질문의원 |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
| 답변자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
| 제목   | 하수, 우수관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 |

### 질문요지

- 제천시의 세천, 하천, 지방천의 하수, 우수관로 관리현황 및 상습 침수구역(도로포함) 현황 및 향후대책은?
- 집중호우시 강우량과 현 관로시설의 적정성여부, 집단시설(아파트, 택지, 공단조성 등) 허가시 우수, 오수용량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 평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지극한 정성으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짐짓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지난 8월 장마시 수해 현장을 봄낮없이 확인하시는 등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하시는 정성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천, 하천, 지방천의 하수, 우수관로 관리현황 및 상습침수구역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천(도랑,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및 하수관로 등 단위 시설물이 우리행정에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기준틀과 과정을 살펴보면
-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위계획은 시가화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모태가 되며, 부문별 계획(교통, 주택,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일체)에서 관련 개별법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 ① 하수도의 경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망계획
- ② 상수도의 경우 상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망계획
- ③ 공원의 경우 공원기본계획
- ④ 교통의 경우 교통 중장기계획
- ⑤ 하천의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붙임1. 도시기본계획 발췌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일련의 단위부문별 계획에 따라 집행하더라도 당시 환경과 현재의 변화된 상황, 미래 예측이 잘못된 부분 등을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과 일일이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전체를 보는 거시적 입장에서 관련 팀이 함께 풀어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천, 하수관거 기본현황을 보면,

- 하천은 총연장 593.33km로서
  - ① 국가하천 (관리청: 건교부 장관) 1개소 33.5km
  - ② 지방1급 하천(관리청: 건교부 장관) 1개소 0.7km
  - ③ 지방2급 하천(관리청: 충청북도지사) 21개소 246.5km
  - ④ 소 하천 (관리청: 제천 시) 223개소 346.13km 가 있습니다.
- ※ 이중 지방 2급하천 9개소(장평천, 고암천, 하소천, 광천, 성천, 원서천, 미당천, 팔송천, 제천천)와 소하천 전체 223개소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 하천현황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량 현황은 비법정 시설물로써 다만, 지역주민과 읍면동에서 건의시 사안별로 수해대책 차원에서 관리 및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 하수관거 현황은 전체 총연장 523km에 달하며 그중 시내지역에 매설된 하

수관거는 443km로써 95%가 합류식입니다. 그 중 하천내에 설치된 하수관거 시설은 주로 차집관로(주관로)로서

- ① 고암천 구간 5.3km (D300~ 900mm)
- ② 하소천 구간 7.9km (D250~ 600mm)
- ③ 용두천 구간 1.2km (Box 3.5×3.0mm) 입니다.
- 본 차집관로에 하수관거(지선관로)가 연결되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연결부분은 우수토실 시설물이 총 9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건기시에는 오수만 유입되나 우기시에는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유입되는 합류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로 관리현황은 하수기동반 6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매일 하천구간 순찰을 실시하여 우수토실 막힘·관로파손·하수유출 등 이상 발생시에는 즉각 조치하여 하천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동반이 직접보 수 또는 건설업체에 도급 시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 상습침수구역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내동지역 일원 상습침수구역은 교동 제천운수 주변의 12개소이며, 침수되는 주원인은
  - 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 ② 도로 및 철도횡단 Box 협소, 하수관경 협소
  - ③ 하천 단면부족
  - ④ 우기시 도로변 이물질로 인한빗물받이 막힘 등이 주 원인입니다.
- 세부적인 현황은 첨부하여드린 붙임3.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천 개량부분에 대하여는

- ① 지방 2급 하천인 고암천, 하소천등의 재정비계획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하천단면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② 소하천의 경우는 기수립 시행중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매년 국비 4억원정도 확보)하여 개량하겠습니다.
  - ③ 도랑의 경우는 소하천이나 하천과 연계하여 정비하되, 읍면동의 행정력과 지역주민 전의사항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④ 한편, 국도38호선내(고암모산동 제천병원 앞) 태백선 철도를 횡단한 배수암거의 단면부족으로 인하여 침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한국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배수암거를 재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철도공단에서 현장실사를 마치고 현재 사업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 특히, 고암천 주변 상습침수지역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확보후 장기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도로 개량부분에 대하여는

- ① 우리시를 관통하는 국도 38호선인 제천운수앞외 3개소(장락역 옆, 당모루 부락, (구)고암기사식당 앞) 횡단 Box는 소하천 개량과 병행시공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② 그 외에도 봉양읍 학산철교 도로횡단 저지대 상습 침수구간에 대하여는 철도 통과높이 문제로 도로를 인상하지 못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선 철도이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지속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③ 또한, 향후 도시계획도로 신설시 폭12m이상 도로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 연계된 하천을 포함하여 완벽한 우수처리가 되도록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하수도 개량부분에 대하여는

- ① 하수소통 불량구간에 대한 단기대책으로는 기존관로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② 장기대책으로는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시(RFP고시준비 중)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하여 하수배제가 불량한 구간을 포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집중호우시 강우량과 현 관로시설의 적정성여부, 집단시설(아파트, 택지, 공동조성등) 허가시 우수, 오수용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먼저 금번 지역별 집중호우시 강우현황을 보면

- 시내동 지역 : 2007년 8월4일 55mm  
                          8월5일 83mm  
                          8월6일 72mm  
                          8월8일 51mm
- 면지역(8개면 평균): 2007년 8월4일 73mm  
                          8월5일 57mm  
                          8월6일 33mm  
                          8월8일 42mm가 내렸으며,

- 금년도 누계 강우량은 1,317mm이며, 일시에 가장 많이 내린 시우량은 8월 5일 07시에 송학면 64mm로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 현 관로 시설물의 적정여부 문제는

- 총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위부문별 계획에 근거하여 이행되었지만 지난번 집중호우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등 새로운 대책작업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많은 시우량으로 인하여 하수관거의 통수단면이 부족한 지점은 교동 제천운수 주변, 고암모산동 버섯마을 식당앞, 교동 장락역 앞 삼거리 주변 등으로 관거 시설 개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사업포함 전체)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다음은 집단시설(아파트, 택지, 공단조성 등) 허가시 우수, 오수용량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규모 시설 개발과 관련한 집단시설(아파트, 택지, 공단조성) 인허가에 있어 현재는 단지내 및 외의 도로개설 계획구간 등을 고려하여 우수 및 오수용량을 검토 후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설개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위치한 하천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면, 장락동 롯데캐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개설지구

의 배수계획에 횡배수관 설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금년 장마시 배수처리의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 우기시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사업자로 하여금 횡배수관을 추가 시공토록 요청하였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경험으로, 향후 각종 대규모 시설의 인허가에 있어 보다 근원적이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번 수해를 교훈삼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종합처방전(치수대책)을 제시하면,

첫째, 지금의 문제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현재의 단위부문별 계획을 해당 팀에서 수정보완하면서 예산확보등을 반영하고 집행해 나가는 일련의 작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등 각종 대규모시설 입지시에는

- ① 건축허가중 대단위 단지(아파트, 공공시설 등)의 경우 건축팀에서 민원접수하여 해당팀으로 설계적합 여부를 검토의뢰,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 건축팀에서 최종 사업승인하게 되며, 또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절차를 거쳐 피해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② 개발행위 허가시 건축허가와 병행(복합민원)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건축허가 처리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다만, 미 개발지의 경우도 개발을 전제로 하여 사전부터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갖춰나가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처리하겠으며, 혹시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개별민원만 좁게 검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업무연찬이 이루어 지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시행중인 시내권 하수관거 정비(BTL)사업에 관로개량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자가 항상 큰 틀속에서 문제된 부분을 장기적 차원에서 업무 처리토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해당팀 전 공직자가 문제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담아 동일장소에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혁신차원에서 대처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1. 제천도시기본계획 발췌사본 1부.
2. 제천시 관내 하천현황 1부.
3. 시내동 상습침수지역현황 1부.

불임 1.

2016年

(株)정매 1998. 3

# 堤川都市基本計画

堤 川 市

# 第 3 編

## 부문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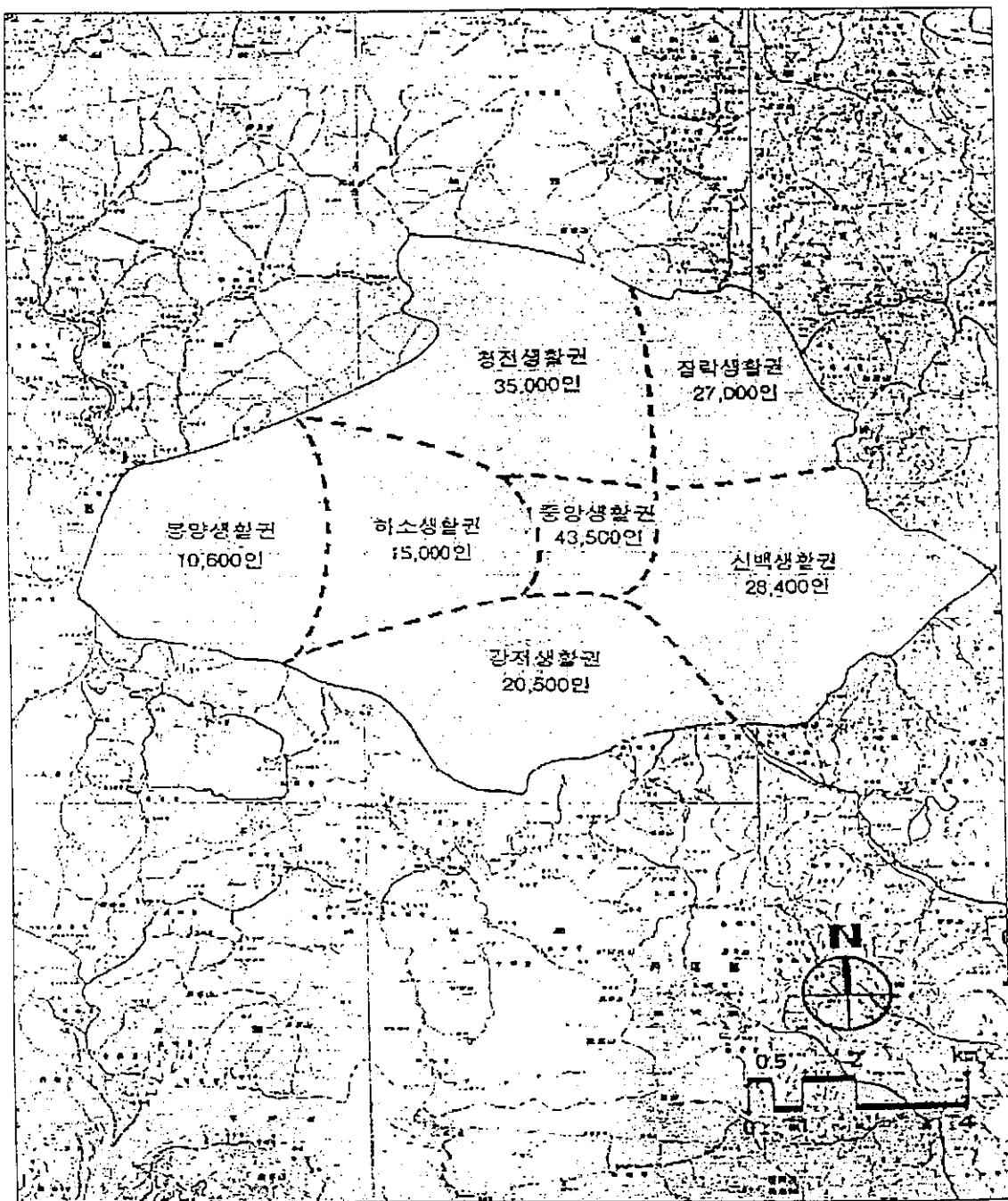
### I. 生活圈 및 人口配分計劃

1. 現況分析
2. 基本方向
3. 生活圈設定
4. 人口配分計劃
5. 段階別 開發計劃

## I. 생활권 및 인구배분 계획

##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도

&lt;도 I-4-1&gt;



## 생활권별 개발 방향

(표 I-4-2)

| 구 분       | 개 발 방 향  |
|-----------|--|
| 중 앙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기능의 강화</li> <li>• 토지이용 고도화</li> <li>• 교통서비스 기능 강화 및 정비(주차장 등)</li> </ul>  |
| 장 락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확충 및 상공업기능 지원 투자</li> <li>• 근린 상업기능의 강화</li> <li>• 비행장 이전 지역은 계획적 단위개발로 도시 기능 보완<br/>(도심권과 연계한 주거지역 확충)</li> </ul>                                |
| 신 백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주택지 개발</li> <li>• 비행장 이전지 계획으로 장래 항공교통 거점기능</li> <li>• 두학축 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 기능 부여</li> <li>• ESSD적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li> </ul>                             |
| 강 저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을 연결하는 금성·청풍축 상에 도시기능 부여<br/>(주거, 교육, 유통업무 등)</li> <li>• 충주 호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지원시설 유치</li> <li>• 유통업무 시설계획에 따른 기능 부여</li> <li>• 대학기능 확충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li> </ul> |
| 하 소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의 계획적 개발로 신산업단지 조성(왕암산업단지)</li> <li>• 도시행정업무 기능 수행(시청사 이전)</li> <li>• 중앙공원 조성</li> <li>• 기존 주거용지의 계획적 개발유도</li> </ul>                                       |
| 청 전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배후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br/>(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li> <li>• 대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사적지와 연계 역사·문화 공간 조성</li> <li>• 대학촌을 도시설계방법을 도입하여 계획적으로 개발</li> </ul>                        |
| 봉 양 생 활 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달재, 탁사정, 배론성지 등 주변 관광지 관련 지원시설 유치</li> <li>• 제천 도시의 주거·공업기능 보완</li> <li>• 농산물의 집산 단지 조성 및 도시 근교농업 육성</li> </ul>  |

**제3편 부문별 계획**

125

**5. 段階別 開發計劃**

- 시가지 정비, 개발계획 및 도시시설 설치계획과 관련 생활권 개발계획을 수립.
- 공원 · 교통계획 등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되 관련사업 및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
- 생활권별 기능에 맞는 적정시설을 입지시키며 시설 및 개발호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설정.
- 지역의 주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배치.

**단계별 개발 우선순위**

&lt;표 I-5-1&gt;

| 단계별                   | 지구별   | 비고  |
|-----------------------|---|---|
| 1 단계<br>(1997 ~ 2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전생활권 및 하소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 행정기능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암산업단지 조성과 배후 생활권 형성.</li> <li>• 의림유원지 구역조정</li> </ul> |
| 2 단계<br>(2002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락생활권의 균형생활권 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고속도로 개통.</li> <li>• 국도 이설에 따른 도시기능 보완.</li> </ul>    |
| 3 단계<br>(2007 ~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결하는 강저생활권 도시기능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양 관광 배후기능 부여.</li> </ul>                              |
| 4 단계<br>(2012 ~ 20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백, 장락생활권을 잇는 개발 낙후지역 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복지기능 강화.</li> <li>• 태백선 철도 이설.</li> </ul>           |

## V. 生活環境計劃

---

1. 住 宅
2. 上 水 道
3. 下 水 道
4. 清 掃
5. 에 너 지

## V. 生活環境計劃

## 1. 住 宅

## 1-1. 現況分析

- '94년 현재 계획구역 주택 보급율은 78.32%로 전국 72.5%보다 높고, 충북 81.38%보다 다소 낮음.

주택 보급 현황

&lt;표 V-1-1&gt;

| 구 分 | 인 구<br>(인) | 가 구 수<br>(가 구) | 주 택 수 (호) |           |           |         |         | 주 택<br>보급율 |
|-----|------------|----------------|-----------|-----------|-----------|---------|---------|------------|
|     |            |                | 계         | 단 독       | 아파트       | 연 립     | 기 타     |            |
| 전 국 | 38,562,279 | 10,945,558     | 7,935,897 | 3,489,315 | 3,298,479 | 489,564 | 658,539 | 72.50      |
| 충 북 | 760,444    | 225,307        | 183,371   | 92,800    | 73,130    | 7,084   | 10,357  | 81.38      |
| 제 천 | 115,591    | 34,035         | 26,655    | 16,722    | 8,414     | 1,234   | 285     | 78.32      |

자료 : 1)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5. 2) 제천시 통계년보, 1995.

주 : 도시기본계획 구역지표

-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62.7%, 아파트 31.6%, 연립주택 4.6%로 단독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단독주택의 비중은 '90년 72.9%에서 '94년 62.7%로 10.2% 감소.
- 아파트의 비중은 '90년 17.3%에서 '94년 31.6%로 14.3% 증가.
- 이같은 현상은 주택 선호 경향의 변화로 핵가족화와 생활의 편리성 추구에 따른다고 판단됨.

주택 현황

&lt;표 V-1-2&gt;

| 구 分  | 인 구<br>(인) | 가 구 수<br>(가 구) | 주 택 수 (호) |        |       |       |       | 주 택<br>보급율 |
|------|------------|----------------|-----------|--------|-------|-------|-------|------------|
|      |            |                | 계         | 단 독    | 아파트   | 연 립   | 기 타   |            |
| 1990 | 108,465    | 27,811         | 19,717    | 14,383 | 3,418 | 1,094 | 822   | 70.90      |
| 1991 | 112,210    | 30,327         | 21,200    | 14,537 | 5,510 | 1,121 | 1,008 | 69.90      |
| 1992 | 112,933    | 31,370         | 24,379    | 14,636 | 6,631 | 1,483 | 1,629 | 77.71      |
| 1993 | 114,788    | 31,885         | 25,141    | 16,273 | 7,404 | 1,197 | 267   | 78.85      |
| 1994 | 115,591    | 34,035         | 26,655    | 16,722 | 8,414 | 1,234 | 285   | 78.32      |

자료 : 제천시·군 통계년보, 각년도.

## 1-2. 基本方向

- 신규 주택 공급에 필요한 택지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공영 개발을 적극 추진.
- 전원적 주택지 개발을 유도.
- 생활권 계획과 인구 배분에 따른 밀도를 고려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주택 개발을 도모.
- 기존 시가지내의 불량주택군은 도시 재개발 등을 통하여 과거 양적 주택공급 정책에서 질적 차원의 주택 정책으로 전환.

## 1-3. 需要推定

- 목표년도 인구 180,000인, 가구당 인구수 3.0인으로 가구수는 60,000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택보급율은 '94년 78.32%에서 목표년도 2016년에는 100%로 제고.

주 택 수 요 전 망

&lt;표 V-1-3&gt;

| 구 分       | 단 위 | 1994    | 1996    | 2001    | 2006    | 2011    | 2016    |
|-----------|-----|---------|---------|---------|---------|---------|---------|
| 총 인 구     | 인   | 115,591 | 118,000 | 129,000 | 160,000 | 170,000 | 180,000 |
| 가 구 수     | 가 구 | 34,035  | 34,705  | 40,312  | 50,000  | 54,838  | 60,000  |
| 공 급 주 택 수 | 호   | 26,655  | 27,417  | 34,265  | 45,000  | 52,096  | 60,000  |
| 주 택 보 급 율 | %   | 78.32   | 79      | 85      | 90      | 95      | 100     |

## 제3편 부문별 계획

197

## 1-4. 住宅供給計劃

- 목표년도의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총 33,630호의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핵가족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공급.
- 택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며, 제천의 이미지 창출과 주거문화 창달 기능 설정 계획.
-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이 40 : 50 : 10의 구성비로서 각각 7,278호, 21,586호, 4,766호의 주택을 계획기간내 건설.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표 V-1-4)

단위 : 호, %

| 구 분     | 1994              | 2001              | 2006              | 2011              | 2016              | 비 고       |
|---------|-------------------|-------------------|-------------------|-------------------|-------------------|-----------|
| 계       | 26,655<br>(100.0) | 34,265<br>(100.0) | 45,000<br>(100.0) | 52,096<br>(100.0) | 60,000<br>(100.0) | 증) 33,630 |
| 단 독 주 택 | 16,722<br>(62.7)  | 18,846<br>(55.0)  | 22,500<br>(50.0)  | 23,443<br>(45.0)  | 24,000<br>(40.0)  | 증) 7,278  |
| 아 파 트   | 8,414<br>(31.6)   | 12,335<br>(36.0)  | 18,450<br>(41.0)  | 23,964<br>(46.0)  | 30,000<br>(50.0)  | 증) 21,586 |
| 연 립 주 택 | 1,234<br>(4.6)    | 3,084<br>(9.0)    | 4,050<br>(9.0)    | 4,689<br>(9.0)    | 6,000<br>(10.0)   | 증) 4,766  |
| 기 타     | 285<br>(1.1)      | -                 | -                 | -                 | -                 |           |

자료 : 제천시, 통계년보, 1995.

## 2. 上水道

## 2-1. 現況分析

- '94년 현재 통합 제천시 전체의 상수도 보급율은 66.6%로 급수인구 97,337인이나 시가지외 지역은 대부분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의존.
- 1일 1인당 급수량은 328ℓ로 전국 평균수준 476ℓ와 충북시급 평균 392ℓ에 미달.

상 수 도 현 황

&lt;표 V-2-1&gt;

| 구 분 | 급수구역<br>인구(천인) | 급수인구<br>(천 인) | 보 급 율<br>(%) | 시설용량<br>(천ton/일) | 급 수 량<br>(천ton/일) | 1일 1인당<br>급수량(ℓ) |
|-----|----------------|---------------|--------------|------------------|-------------------|------------------|
| 전 국 | 38,562         | 36,139        | 93.71        | 20,184           | 17,235            | 476              |
| 충 북 | 760            | 667           | 87.68        | 317              | 262               | 392              |
| 제 천 | 146            | 97            | 66.60        | 39.7             | 32                | 328              |

자료 : 1) 한국도시연감, 1995. 2) 제천시·군 통계연보, 1995.

주 : 제천통합시 전체 통계.

상 수 도 시 설 현 황(취수원)

&lt;표 V-2-2&gt;

| 구 分       | 구 역 면적<br>(㎢) | 취 수 량<br>(t / 일) | 정 수 능 력<br>(t / 일) | 급 수 인 구<br>(인) | 비 고 |
|-----------|---------------|------------------|--------------------|----------------|-----|
| 계         | 1,011         | 40,000           | 37,000             | 82,000         | .   |
| 용 · 석 · 계 | 0.72          | 35,000           | 32,000             | 71,000         |     |
| 동 현 계     | 0.291         | 5,000            | 5,000              | 11,000         |     |

자료 : 제천시 도시과, 1995

주 : 읍 · 면 · 상수도 제외.

**제3편 부문별 계획**

199

**■ 광역상수도 시설 계획**

- 수원 : 신규댐 (영월읍 거문리)
- 시설용량 : 100 천톤/일 (목표년도 2011년)
- 사업내용 :
  - 취수장 : 1 개소 (100천 톤/일)
  - 정수장 : 1 개소 (100천 톤/일)
  - 관로 : D = 300~1000mm L = 45.0km
- 사업비 : 100,500 백만 원
- 사업기간 : '98 ~ 2004년
- 공급시기 : 2011년

**광역 상수도 시설 계획 공급량**

&lt;표 V-2-3&gt;

| 구분                | 계       | 제천시    | 영월군    |
|-------------------|---------|--------|--------|
| 계획 공급량( $m^3$ /일) | 100,000 | 70,000 | 30,000 |

**■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

- 수원 : 강원도 영월군 평창강
- 시설 용량 :
  - 취수장 : 93.5천 톤/일
  - 정수장 : 85천 톤/일
- 사업비 : 370억 원
- 사업기간 : '92 ~ '96년
- 공급시기 : 1997년

**2-2. 基本方向**

- 상수도 보급율을 '94년 80%에서 2016년 98.0%로 제고.
- 금수량의 수요는 계획인구에 비례한 상위계획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 지속 추진.
- 급수 대상 구역을 단계별로 확대시키는 한편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간이 급수시설과 지하수 개발로 총당.

## 2-3. 需要推定

- 생활용수는 계획급수인구를 기준으로 산정.
- 공업용수는 용수원 단위 0.04㎥/평을 적용.
- 상수도 보급률은 '94년 80%에서 2016년 98% 전망.

## 상수도 수요 추정

(표 V-2-4)

| 구 분       | 단위                | 1994    | 1996    | 2001    | 2006    | 2011    | 2016    |
|-----------|-------------------|---------|---------|---------|---------|---------|---------|
| 총 용 수 량   | m <sup>3</sup> /일 | 32,785  | 37,902  | 63,440  | 82,700  | 95,328  | 121,663 |
| 생 활 용 수 량 | m <sup>3</sup> /일 | 32,785  | 37,902  | 46,440  | 65,700  | 78,328  | 92,963  |
| 계 획 인 구   | 인                 | 115,591 | 118,000 | 129,000 | 160,000 | 170,000 | 180,000 |
| 급 수 인 구   | 인                 | 92,430  | 103,840 | 116,110 | 148,800 | 161,500 | 176,400 |
| 보 급 률     | %                 | 80      | 88      | 90      | 93      | 95      | 98      |
| 1인 1일 급수량 | ℓ                 | 354     | 365     | 400     | 442     | 485     | 527     |
| 공 업 용 수 량 | m <sup>3</sup> /일 | -       | -       | 17,000  | 17,000  | 17,000  | 28,700  |

자료 : 제천시 통계년보, 1995

주 : 도시기본구역내

## 2-4. 上水道 施設計劃

- 평창강 계통의 상수도시설이 '96년도 준공됨에 따라 37 천톤/일에서 85 천톤/일로 상수도 용량 확보.
- 2011년 이후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부족분 10.328천톤/일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제천 70천톤/일)에서 공급.
- 간이 상수도 오염과 수원 고갈에 대비 급수구역의 지속적 확대.
- 가뭄에 대비한 생활권별 적정 지하수 개발.
- 갈수기 대비 심정호, 소류지 확충.
- 비상급수대책으로 생활권별 물탱크, 지하저수조 및 비상우물 설치유도.
- 용수의 절약, 수질오염부하량 제감등을 위하여 중수도를 도입·시행하는 방안을 상수도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

## 3. 下水道

## 3-1. 現況分析

- 제천시 하수도의 배수 방식은 합류식 하수관으로 기존 하수도 시설의 대부분이 흙관으로 매설.
- 제천시 시가지 일부 및 외곽지역 그리고 봉양 대부분의 지역이 하수도 시설이 브로 되지 않아 자연 방류되고 있는 실정임.

하 수 도 현 황

&lt;표 V-3-1&gt;

| 구<br>분          | 1991                 | 1992    | 1993    | 1994    | 비<br>고 |
|-----------------|----------------------|---------|---------|---------|--------|
| A) 행정 구역 면적     | 94.52                | 94.50   | 94.50   | 94.35   |        |
| B) 계획 배수 면적     | 12.61                | 12.61   | 12.61   | 12.61   |        |
| C) 우수 배수 면적 (㎢) | 9.2                  | 9.42    | 9.42    | 10.01   |        |
| D) 도시 인구 (인)    | 104,015              | 107,522 | 109,382 | 115,591 |        |
| E) 배수 인구 (인)    | 86,000               | 87,500  | 90,150  | 84,730  |        |
| 하수 보급률 (%)      | 배수 면적 기준 (C/B × 100) | 72.50   | 74.56   | 74.70   | 79.40  |
|                 | 배수 인구 기준 (E/D × 100) | 82.70   | 81.40   | 82.40   | 73.30  |

자료 : 제천시, 통계년보, 1995. 제천시 하수도 기본계획, 1996

## 붙임 2.

## 하 천 현 황

## 국가하천

| 순위 | 하천명 | 유수의 계통(수계) |     |     |     | 하천의 구간(위치)     |                | 하천<br>연장<br>(km) | 유역<br>면적<br>(km <sup>2</sup> ) | 비고 |
|----|-----|------------|-----|-----|-----|----------------|----------------|------------------|--------------------------------|----|
|    |     | 본류         | 1지류 | 2지류 | 3지류 | 기 점            | 종 점            |                  |                                |    |
| 1  | 한강  | 한강         |     |     |     | 시계<br>(단양군 경계) | 시계<br>(충주시 경계) | 33.50            |                                |    |

## 지방1급 하천

| 순위 | 하천명 | 유수의 계통(수계) |     |     |     | 하천의 구간(위치)           |                      | 하천<br>연장<br>(km) | 유역<br>면적<br>(km <sup>2</sup> ) | 비고 |
|----|-----|------------|-----|-----|-----|----------------------|----------------------|------------------|--------------------------------|----|
|    |     | 본류         | 1지류 | 2지류 | 3지류 | 기 점                  | 종 점                  |                  |                                |    |
| 1  | 평창강 | 한강         | 평창강 |     |     | 제천시 송학면<br>(강원 충북도계) | 제천시 송학면<br>(강원 충북도계) | 0.70             |                                |    |

## 지방 2급 하천

| 순위 | 하천명  | 유수의 계통(수계) |     |     |     | 하천의 구간(위치) |                         | 하천<br>연장<br>(km) | 유역<br>면적<br>(km <sup>2</sup> ) | 수립<br>여부 |
|----|------|------------|-----|-----|-----|------------|-------------------------|------------------|--------------------------------|----------|
|    |      | 본류         | 1지류 | 2지류 | 3지류 | 기 점        | 종 점                     |                  |                                |          |
| 합계 | 21개소 |            |     |     |     |            |                         | 246.50           | 1,311.48                       |          |
| 1  | 장평천  | 한강         | 제천천 | 장평천 |     | 신백두학동 자작   | 봉양읍주포리<br>(제천천 합류점)     | 21.0             | 109.26                         | 여        |
| 2  | 고암천  | 한강         | 제천천 | 장평천 | 고암천 | 고암모산동 고암동  | 동현동<br>(장평천 합류점)        | 4.5              | 14.50                          | 여        |
| 3  | 하소천  | 한강         | 제천천 | 장평천 | 하소천 | 용두동 신월     | 영천동<br>(장평천 합류점)        | 6.0              | 21.25                          | 여        |
| 4  | 원서천  | 한강         | 제천천 | 원서천 |     | 백운면 운학리    | 충주시산척면석천리<br>(제천천 합류점)  | 23.0             | 115.68                         | 여        |
| 5  | 무도천  | 한강         | 무도천 |     |     | 송학면 도화리    | 영월군 서면 용석리<br>(평창강 합류점) | 12.5             | 35.68                          | 부        |
| 6  | 고교천  | 한강         | 한강  | 고교천 |     | 금성면 동막리    | 청풍면황석리<br>(한강 합류점)      | 14.0             | 39.92                          | 부        |

| 순위 | 하천명 | 유수의 계통(수계) |     |     |     | 하천의 구간(위치) |                        | 하천연장(km) | 유역면적(km <sup>2</sup> ) | 수립여부 |
|----|-----|------------|-----|-----|-----|------------|------------------------|----------|------------------------|------|
|    |     | 본류         | 1지류 | 2지류 | 3지류 | 기점         | 종점                     |          |                        |      |
| 7  | 미당천 | 한강         | 제천천 | 장평천 | 미당천 | 봉양읍 미당리    | 봉양읍 신리<br>(장평천 합류점)    | 5.5      | 12.50                  | 여    |
| 8  | 수산천 | 한강         | 수산천 |     |     | 수산면 오타리    | 수산면 원대리<br>(한강 합류점)    | 8.0      | 29.00                  | 부    |
| 9  | 팔송천 | 한강         | 제천천 | 팔송천 |     | 봉양읍 명암리    | 봉양읍 봉양리<br>(제천천 합류점)   | 10.0     | 28.00                  | 여    |
| 10 | 오미천 | 한강         | 평창강 | 주천강 | 황둔천 | 송학면 오미리    | 원주시신림면황둔리<br>(황둔천 합류점) | 5.0      | 13.25                  | 부    |
| 11 | 송한천 | 한강         | 평천강 | 주천강 | 송한천 | 송학면 송한리    | 영월군주천면금마리<br>(주천강 합류점) | 6.0      | 11.25                  | 부    |
| 12 | 장선천 | 한강         | 장선천 |     |     | 청풍면 장선리    | 청풍면사오리<br>(한강 합류점)     | 7.0      | 17.00                  | 부    |
| 13 | 원박천 | 한강         | 제천천 | 원박천 |     | 봉양읍 원박리    | 봉양읍 공전리<br>(장평천 합류점)   | 5.5      | 15.25                  | 부    |
| 14 | 운학천 | 한강         | 제천천 | 원서천 | 운학천 | 백운면 운학리    | 백운면 덕동리<br>(원서천 합류점)   | 7.0      | 30.25                  | 부    |
| 15 | 화당천 | 한강         | 제천천 | 원서천 | 화당천 | 백운면 화당리    | 백운면 도곡리<br>(원서천 합류점)   | 4.0      | 15.50                  | 부    |
| 16 | 고명천 | 한강         | 고명천 |     |     | 수산면 오타리    | 청풍면 단리<br>(한강 합류점)     | 7.5      | 31.5                   | 부    |
| 17 | 동달천 | 한강         | 동달천 |     |     | 충주시상모면미곡리  | 덕산면 수산리<br>(한강 합류점)    | 17.0     | 220.80                 | 부    |
| 18 | 용두천 | 한강         | 제천천 | 장평천 | 용두천 | 청진동        | 영천동<br>(장평천 합류점)       | 3.0      | 5.75                   | 부    |
| 19 | 제천천 | 한강         | 제천천 |     |     | 봉양읍 학산리    | 충주시산척면명서리<br>(한강 합류점)  | 45.0     | 392.34                 | 여    |
| 20 | 광천  | 한강         | 광천  |     |     | 덕산면 월악리    | 한수면 탄지리<br>(한강 합류점)    | 19.0     | 113.6                  | 여    |
| 21 | 성천  | 한강         | 광천  | 성천  |     | 덕산면 도가리    | 덕산면 수산리<br>(한강 합류점)    | 16.0     | 39.20                  | 여    |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합 계 |      | 223개소  |            |     |            | 1,198       |     |    |  |  |  |
| 1   | 대호지천 | 백운면    | 화당리 396-4  | 백운면 | 화당리 409-2  | 1.17        | 화당천 |    |  |  |  |
| 2   | 비디재천 | 백운면    | 화당리 391    | 백운면 | 화당리 400-6  | 5.63        | 화당천 |    |  |  |  |
| 3   | 성내골천 | 백운면    | 화당리 276    | 백운면 | 화당리 122-1  | 0.62        | 화당천 |    |  |  |  |
| 4   | 여우네천 | 백운면    | 화당리 15-1   | 백운면 | 화당리 26-5   | 3           | 운학천 |    |  |  |  |
| 5   | 상학동천 | 백운면    | 덕동리 348    | 백운면 | 덕동리 277-1  | 10.05       | 운학천 |    |  |  |  |
| 6   | 용산골천 | 백운면    | 운학리 581    | 백운면 | 운학리 운학천    | 3.71        | 운학천 |    |  |  |  |
| 7   | 새터말천 | 백운면    | 운학리 293    | 백운면 | 운학리 운학천    | 0.35        | 운학천 |    |  |  |  |
| 8   | 독가촌천 | 백운면    | 화당리 736    | 백운면 | 운학리 운학천    | 12.37       | 운학천 |    |  |  |  |
| 9   | 거문풀천 | 백운면    | 운학리 429    | 백운면 | 운학리 341    | 5.7         | 운학천 |    |  |  |  |
| 10  | 구례골천 | 백운면    | 운학리 1-5    | 백운면 | 운학리 193    | 11.92       | 운학천 |    |  |  |  |
| 11  | 공재천  | 백운면    | 도곡리 808-2  | 백운면 | 도곡리 613    | 4.67        | 원서천 |    |  |  |  |
| 12  | 꼴미천  | 백운면    | 도곡리 234    | 백운면 | 도곡리 원서천    | 1.38        | 원서천 |    |  |  |  |
| 13  | 손두안천 | 백운면    | 방학리 산122   | 백운면 | 방학리 44-1   | 7.96        | 원서천 |    |  |  |  |
| 14  | 큰골천  | 백운면    | 방학리 55-4   | 백운면 | 방학리 63-2   | 5.02        | 원서천 |    |  |  |  |
| 15  | 가정천  | 백운면    | 방학리 1015   | 백운면 | 방학리 772    | 22          | 원서천 |    |  |  |  |
| 16  | 재현천  | 백운면    | 원월리 646    | 백운면 | 원월리 462-6  | 8.97        | 원서천 |    |  |  |  |
| 17  | 소월천  | 백운면    | 원월리 866    | 백운면 | 원월리 201    | 8.32        | 원서천 |    |  |  |  |
| 18  | 대월천  | 백운면    | 원월리 241-51 | 백운면 | 원월리 201    | 16.53       | 원서천 |    |  |  |  |
| 19  | 대월1천 | 백운면    | 원월리 241-39 | 백운면 | 원월리 241-19 | 1.29        | 원서천 |    |  |  |  |
| 20  | 왕당천  | 백운면    | 모정리 43-4   | 백운면 | 모정리 393-1  | 7.58        | 원서천 |    |  |  |  |
| 21  | 수론천  | 백운면    | 모정리 33-5   | 백운면 | 모정리 354    | 7.07        | 원서천 |    |  |  |  |
| 22  | 모정천  | 백운면    | 모정리 354    | 백운면 | 모정리 235    | 1.03        | 원서천 |    |  |  |  |
| 23  | 평동천  | 백운면    | 평동리 산78    | 백운면 | 평동 589-8   | 6.57        | 원서천 |    |  |  |  |
| 24  | 평장천  | 백운면    | 평동2리 387-1 | 백운면 | 평동 532     | 1.38        | 원서천 |    |  |  |  |
| 25  | 골말천  | 백운면    | 방학리 93     | 백운면 | 방학리 540-3  | 4.98        | 원서천 |    |  |  |  |
| 26  | 방도교천 | 백운면    | 방학리 381    | 백운면 | 방학리 874    | 18.94       | 원서천 |    |  |  |  |
| 27  | 박달재천 | 봉양읍    | 원박리 945    | 봉양읍 | 원박리 890    | 6.69        | 제천천 |    |  |  |  |
| 28  | 장구목천 | 봉양읍    | 연박리 315    | 봉양읍 | 연박리 1246   | 1.3         | 제천천 |    |  |  |  |
| 29  | 골안천  | 봉양읍    | 연박리 1398   | 봉양읍 | 연박리 제천천    | 4.89        | 제천천 |    |  |  |  |
| 30  | 다리목천 | 봉양읍    | 연박리 935-2  | 봉양읍 | 연박리 제천천    | 0.91        | 제천천 |    |  |  |  |
| 31  | 절골천  | 봉양읍    | 팔송리 478    | 봉양읍 | 팔송리 407    | 0.69        | 제천천 |    |  |  |  |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32 | 신촌천   | 봉양읍    | 주포리 대림요업   | 봉양읍 | 주포리 제천천    | 0.48        | 제천천 |    |  |  |  |
| 33 | 큰골천   | 봉양읍    | 팔송리 212    | 봉양읍 | 팔송리 322-1  | 1.39        | 제천천 |    |  |  |  |
| 34 | 봉양천   | 봉양읍    | 명도리 534-2  | 봉양읍 | 봉양읍 657-7  | 9.94        | 제천천 |    |  |  |  |
| 35 | 바랑골천  | 봉양읍    | 팔송리 134    | 봉양읍 | 팔송리 62-1   | 0.57        | 제천천 |    |  |  |  |
| 36 | 큰말천   | 봉양읍    | 명도리 337    | 봉양읍 | 명도리 166    | 1.82        | 제천천 |    |  |  |  |
| 37 | 베른천   | 봉양읍    | 구학리 831    | 봉양읍 | 구학리 218    | 37.05       | 제천천 |    |  |  |  |
| 38 | 옥전천   | 봉양읍    | 옥전리 942    | 봉양읍 | 옥전리 198    | 35.94       | 제천천 |    |  |  |  |
| 39 | 댓골천   | 봉양읍    | 옥전리 88-1   | 봉양읍 | 옥전리 226-3  | 0.23        | 제천천 |    |  |  |  |
| 40 | 도장골천  | 봉양읍    | 연박리 45     | 봉양읍 | 연박리 273    | 3.16        | 제천천 |    |  |  |  |
| 41 | 갈경이천  | 봉양읍    | 삼거리 329    | 봉양읍 | 삼거리 삼거리천   | 3.07        | 제천천 |    |  |  |  |
| 42 | 삼거리천  | 봉양읍    | 삼거리 998    | 봉양읍 | 연박리 279    | 51.87       | 제천천 |    |  |  |  |
| 43 | 술티천   | 봉양읍    | 삼거리 927-1  | 봉양읍 | 삼거리 981    | 2.1         | 제천천 |    |  |  |  |
| 44 | 논골천   | 봉양읍    | 삼거리 1253   | 봉양읍 | 삼거리 1160   | 1.64        | 제천천 |    |  |  |  |
| 45 | 시거리천  | 봉양읍    | 삼거리 819-2  | 봉양읍 | 삼거리 삼거리천   | 0.79        | 제천천 |    |  |  |  |
| 46 | 오리골천  | 봉양읍    | 연박리 250    | 봉양읍 | 연박리 193    | 0.51        | 제천천 |    |  |  |  |
| 47 | 마곡천   | 봉양읍    | 마곡리 15     | 봉양읍 | 마곡리 566-1  | 3.48        | 제천천 |    |  |  |  |
| 48 | 음마곡천  | 봉양읍    | 마곡리 산53-1  | 봉양읍 | 마곡리 559    | 12.01       | 제천천 |    |  |  |  |
| 49 | 지심골천  | 봉양읍    | 구곡리 511-1  | 봉양읍 | 구곡 559     | 1.23        | 제천천 |    |  |  |  |
| 50 | 구곡천   | 화산동    | 명지 57-1    | 화산동 | 강제 장평천     | 26.58       | 제천천 |    |  |  |  |
| 51 | 굴탄천   | 봉양읍    | 구곡리 1228-2 | 봉양읍 | 구곡리 1089-3 | 4.04        | 제천천 |    |  |  |  |
| 52 | 한지천   | 백운면    | 애련리 139-7  | 백운면 | 애련리 185    | 1.12        | 제천천 |    |  |  |  |
| 53 | 늘목천   | 봉양읍    | 학산리 147    | 봉양읍 | 학산리 156    | 2.45        | 제천천 |    |  |  |  |
| 54 | 광암천   | 봉양읍    | 학산리 138    | 봉양읍 | 학산리 578-1  | 0.59        | 제천천 |    |  |  |  |
| 55 | 공천천   | 봉양읍    | 공전리 788    | 봉양읍 | 공전1리 295   | 13.66       | 원박천 |    |  |  |  |
| 56 | 삼성골천  | 봉양읍    | 원박리 759    | 봉양읍 | 원박리 717-2  | 0.64        | 원박천 |    |  |  |  |
| 57 | 승지골천  | 봉양읍    | 원박리 599    | 봉양읍 | 공전리 255-12 | 1.46        | 원박천 |    |  |  |  |
| 58 | 공전1천  | 봉양읍    | 공전리 157    | 봉양읍 | 공전리 233    | 0.78        | 원박천 |    |  |  |  |
| 59 | 비끼재천  | 봉양읍    | 명암리 426    | 봉양읍 | 명암리 464    | 0.52        | 팔송천 |    |  |  |  |
| 60 | 목우동천  | 봉양읍    | 명암리 479    | 봉양읍 | 명암리 555-1  | 0.81        | 팔송천 |    |  |  |  |
| 61 | 밤나무골천 | 봉양읍    | 명암리 252    | 봉양읍 | 명암리 212    | 2.11        | 팔송천 |    |  |  |  |
| 62 | 현터골천  | 봉양읍    | 명암리 안문바위골  | 봉양읍 | 명암리 명암천    | 1.76        | 팔송천 |    |  |  |  |
| 63 | 명암천   | 봉양읍    | 명암리 49     | 봉양읍 | 명암리 602    | 35.19       | 팔송천 |    |  |  |  |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km <sup>2</sup> )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64 | 매끌천   | 봉양읍    | 명도리 안매끌   | 봉양읍 | 명도2리 98    | 6.71                       | 팔송천 |    |  |  |  |
| 65 | 세월이천  | 용두동    | 신월 청전 세명대 | 용두동 | 신월 청전 하소천  | 8.18                       | 하소천 |    |  |  |  |
| 66 | 안골천   | 용두동    | 신월 잣나무골   | 용두동 | 신월 세월이천    | 1.19                       | 하소천 |    |  |  |  |
| 67 | 주축천   | 용두동    | 신월 주축부락   | 용두동 | 신월 동산말천    | 0.62                       | 하소천 |    |  |  |  |
| 68 | 동산말천  | 용두동    | 신월 947    | 용두동 | 신월 하소천     | 1.63                       | 하소천 |    |  |  |  |
| 69 | 짚고개천  | 용두동    | 신월 윤전이골   | 용두동 | 신월 하소천     | 4.38                       | 하소천 |    |  |  |  |
| 70 | 잣나무천  | 용두동    | 신월 주축부락   | 용두동 | 신월 하소천     | 0.94                       | 하소천 |    |  |  |  |
| 71 | 의림천   | 용두동    | 모산 65-1   | 용두동 | 모산 238-9   | 7.07                       | 하소천 |    |  |  |  |
| 72 | 대미론천  | 봉양읍    | 미당리 산61   | 봉양읍 | 미당리 659-1  | 1.3                        | 미당천 |    |  |  |  |
| 73 | 철골천   | 봉양읍    | 미당리 산75   | 봉양읍 | 왕암 미당천     | 1.49                       | 미당천 |    |  |  |  |
| 74 | 한의골1천 | 봉양읍    | 미당리 한의골   | 봉양읍 | 미당리 미당천    | 0.83                       | 미당천 |    |  |  |  |
| 75 | 소새천   | 용두동    | 왕암 262-2  | 용두동 | 왕암 미당천     | 2.47                       | 미당천 |    |  |  |  |
| 76 | 색경천   | 용두동    | 왕암 장지기골   | 용두동 | 왕암 소새천     | 0.8                        | 미당천 |    |  |  |  |
| 77 | 서당골천  | 용두동    | 왕암 6      | 용두동 | 왕암 소새천     | 1.26                       | 미당천 |    |  |  |  |
| 78 | 새터천   | 봉양읍    | 장평리 66    | 봉양읍 | 장평1리 609-7 | 1.83                       | 장평천 |    |  |  |  |
| 79 | 고산동천  | 봉양읍    | 장평리 486   | 봉양읍 | 장평1리 692   | 0.87                       | 장평천 |    |  |  |  |
| 80 | 장넘이천  | 봉양읍    | 장평리 33-3  | 봉양읍 | 장평2리 238-1 | 1.07                       | 장평천 |    |  |  |  |
| 81 | 고모동천  | 봉양읍    | 장평리 381   | 봉양읍 | 장평2리 584-3 | 5.28                       | 장평천 |    |  |  |  |
| 82 | 안고모동천 | 봉양읍    | 장평리 451   | 봉양읍 | 장평리 3195   | 5.28                       | 장평천 |    |  |  |  |
| 83 | 돌모루천  | 봉양읍    | 삼거리 104   | 봉양읍 | 신리 장평천     | 8.67                       | 장평천 |    |  |  |  |
| 84 | 보래천   | 봉양읍    | 장평리 927   | 봉양읍 | 장평리 914-1  | 0.4                        | 장평천 |    |  |  |  |
| 85 | 아랫말천  | 영천동    | 신리 콩발골    | 영천동 | 신리 장평천     | 1.05                       | 장평천 |    |  |  |  |
| 86 | 제비랑천  | 봉양읍    | 삼거리 3     | 봉양읍 | 삼거리 212    | 0.98                       | 장평천 |    |  |  |  |
| 87 | 동막골천  | 영천동    | 신리 638-1  | 영천동 | 신리 52-2    | 3.27                       | 장평천 |    |  |  |  |
| 88 | 싸리골천  | 영천동    | 천남 451    | 영천동 | 천남 장평천     | 1.73                       | 장평천 |    |  |  |  |
| 89 | 천남천   | 영천동    | 천남 35-1   | 영천동 | 천남 장평천     | 1.36                       | 장평천 |    |  |  |  |
| 90 | 웅골천   | 영천동    | 천남 469    | 영천동 | 천남 360     | 1.38                       | 장평천 |    |  |  |  |
| 91 | 원강제천  | 화산동    | 강제 절골소류지  | 화산동 | 강제 장평천     | 1.59                       | 장평천 |    |  |  |  |
| 92 | 무지골천  | 화산동    | 산곡 465    | 화산동 | 산곡 315     | 0.37                       | 장평천 |    |  |  |  |
| 93 | 느챙이천  | 화산동    | 산곡 495    | 화산동 | 명지 171-1   | 1.59                       | 장평천 |    |  |  |  |
| 94 | 물골천   | 화산동    | 산곡 410-2  | 화산동 | 산곡 151-1   | 2.01                       | 장평천 |    |  |  |  |
| 95 | 새마을천  | 화산동    | 산곡 117-1  | 화산동 | 산곡 151-1   | 1.76                       | 장평천 |    |  |  |  |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96  | 망월천   | 화산동    | 명지 망월리    | 화산동 | 산곡 산곡천    | 8.78        | 장평천 |    |  |  |  |
| 97  | 산곡천   | 화산동    | 산곡 574-5  | 화산동 | 산곡 장평천    | 83.89       | 장평천 |    |  |  |  |
| 98  | 웃골천   | 화산동    | 명지 망월리    | 화산동 | 강제 장평천    | 0.49        | 장평천 |    |  |  |  |
| 99  | 안골천   | 봉양읍    | 구곡리 314-1 | 봉양읍 | 구곡리 68-3  | 2.78        | 장평천 |    |  |  |  |
| 100 | 찬우물천  | 동현동    | 고명 KBS중계소 | 동현동 | 고명 장평천    | 1.4         | 장평천 |    |  |  |  |
| 101 | 중골천   | 동현동    | 대량 160    | 동현동 | 고명 208    | 1.14        | 장평천 |    |  |  |  |
| 102 | 대량천   | 동현동    | 동현 106    | 동현동 | 대량 산54    | 11.59       | 장평천 |    |  |  |  |
| 103 | 세거리천  | 동현동    | 동현 139    | 동현동 | 두학 888-6  | 7.32        | 장평천 |    |  |  |  |
| 104 | 마골천   | 동현동    | 두학 436-1  | 동현동 | 두학 1016   | 1.93        | 장평천 |    |  |  |  |
| 105 | 흑석천   | 송학면    | 무도리 870-3 | 동현동 | 두학 485-2  | 12.55       | 장평천 |    |  |  |  |
| 106 | 중말천   | 동현동    | 두학 409-4  | 동현동 | 두학 634    | 1.85        | 장평천 |    |  |  |  |
| 107 | 싸리골천  | 동현동    | 두학 381    | 동현동 | 두학 365    | 0.31        | 장평천 |    |  |  |  |
| 108 | 부곡천   | 동현동    | 두학 196    | 동현동 | 두학 장치미못   | 1.57        | 장평천 |    |  |  |  |
| 109 | 텃골천   | 동현동    | 두학 299-1  | 동현동 | 두학 395    | 3.83        | 장평천 |    |  |  |  |
| 110 | 자작천   | 동현동    | 자작 99     | 동현동 | 두학 22     | 16.79       | 장평천 |    |  |  |  |
| 111 | 샘골천   | 동현동    | 자작 63-1   | 동현동 | 두학 171    | 2.29        | 장평천 |    |  |  |  |
| 112 | 상풍천   | 동현동    | 두학 266    | 동현동 | 두학 305    | 1.47        | 장평천 |    |  |  |  |
| 113 | 쥐실천   | 동현동    | 흑석 60-1   | 동현동 | 흑석 51-1   | 1.41        | 장평천 |    |  |  |  |
| 114 | 점재천   | 송학면    | 무도리 1080  | 송학면 | 무도리 998-1 | 2           | 장평천 |    |  |  |  |
| 115 | 불당골천  | 송학면    | 무도리 1051  | 송학면 | 무도리 957-3 | 0.55        | 장평천 |    |  |  |  |
| 116 | 양구터천  | 교동     | 고암 양구터    | 교동  | 고암 고암천    | 2.67        | 고암천 |    |  |  |  |
| 117 | 터골천   | 교동     | 고암 터골     | 교동  | 고암 무덤실    | 0.92        | 고암천 |    |  |  |  |
| 118 | 무덤실천  | 교동     | 고암 무덤실    | 교동  | 고암 고암천    | 1.39        | 고암천 |    |  |  |  |
| 119 | 둔전골천  | 교동     | 고암 둔전골    | 교동  | 고암 변전소천   | 1.75        | 고암천 |    |  |  |  |
| 120 | 변전소천  | 교동     | 고암 제천전혁소  | 교동  | 고암 고암천    | 2.89        | 고암천 |    |  |  |  |
| 121 | 음만전천  | 송학면    | 무도리 784   | 송학면 | 무도리 246   | 4.52        | 무도천 |    |  |  |  |
| 122 | 사기장골천 | 송학면    | 무도리 588   | 송학면 | 도화리 8-5   | 8.17        | 무도천 |    |  |  |  |
| 123 | 음방천   | 송학면    | 무도리 337   | 송학면 | 무도리 210-9 | 0.96        | 무도천 |    |  |  |  |
| 124 | 못두천   | 송학면    | 무도리 산13-1 | 송학면 | 무도리 158   | 1.53        | 무도천 |    |  |  |  |
| 125 | 골안천   | 송학면    | 무도리 산23-4 | 송학면 | 시곡리 480-2 | 5.27        | 무도천 |    |  |  |  |
| 126 | 가래풀천  | 송학면    | 시곡리 52-1  | 송학면 | 장곡리 612   | 4.22        | 무도천 |    |  |  |  |
| 127 | 당곡천   | 송학면    | 입석2리 154  | 송학면 | 장곡리 607-1 | 2.37        | 무도천 |    |  |  |  |

## 34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128 | 깊은골1천 | 송학면    | 시곡리 322    | 송학면 | 입석리 651    | 1.41        | 무도천 |    |  |  |  |
| 129 | 깊은골천  | 송학면    | 시곡리 341    | 송학면 | 시곡리 252    | 1.57        | 무도천 |    |  |  |  |
| 130 | 정암천   | 송학면    | 시곡리 산63-2  | 송학면 | 시곡리 648    | 0.55        | 무도천 |    |  |  |  |
| 131 | 원마루천  | 송학면    | 시곡리 974    | 송학면 | 시곡리 무도천    | 1.14        | 무도천 |    |  |  |  |
| 132 | 양방천   | 송학면    | 시곡리 1018   | 송학면 | 시곡리 1095   | 1.52        | 무도천 |    |  |  |  |
| 133 | 개화천   | 송학면    | 포전리 493    | 송학면 | 시곡리 1134-1 | 20.84       | 무도천 |    |  |  |  |
| 134 | 지실천   | 송학면    | 도화리 501    | 송학면 | 도화리 180-3  | 0.86        | 무도천 |    |  |  |  |
| 135 | 동막천   | 송학면    | 도화리 791    | 송학면 | 도화리 무도천    | 2.08        | 무도천 |    |  |  |  |
| 136 | 안말천   | 송학면    | 포전리 514    | 송학면 | 포전리 327    | 1.49        | 무도천 |    |  |  |  |
| 137 | 초장골천  | 송학면    | 송한2리 277   | 송학면 | 송한리 323-1  | 0.49        | 송한천 |    |  |  |  |
| 138 | 교촌천   | 송학면    | 송한2리 554-1 | 송학면 | 송한리 489    | 3.12        | 송한천 |    |  |  |  |
| 139 | 독중길천  | 송학면    | 송한2리 428   | 송학면 | 송한리 413    | 2.17        | 송한천 |    |  |  |  |
| 140 | 엄승골천  | 송학면    | 송한리 1052   | 송학면 | 송한2리 821   | 6.54        | 송한천 |    |  |  |  |
| 141 | 절골천   | 송학면    | 송한2리 1060  | 송학면 | 송한2리 792   | 4.1         | 송한천 |    |  |  |  |
| 142 | 상송한천  | 송학면    | 송한2리 906   | 송학면 | 송한2리 819   | 2.43        | 송한천 |    |  |  |  |
| 143 | 나령1천  | 송학면    | 오미리 91     | 송학면 | 오미리 55     | 1.25        | 오미천 |    |  |  |  |
| 144 | 선바위천  | 송학면    | 오미리 115    | 송학면 | 오미리 102    | 0.42        | 오미천 |    |  |  |  |
| 145 | 평촌1천  | 송학면    | 오미리 19     | 송학면 | 오미리 70-2   | 4.75        | 오미천 |    |  |  |  |
| 146 | 소바위2천 | 송학면    | 오미리 488    | 송학면 | 오미리 238    | 3.94        | 오미천 |    |  |  |  |
| 147 | 소바위1천 | 송학면    | 오미리 479-1  | 송학면 | 오미리 413    | 0.82        | 오미천 |    |  |  |  |
| 148 | 줄병골천  | 청풍면    | 장선리 산26    | 청풍면 | 장선리 96     | 1.8         | 장선천 |    |  |  |  |
| 149 | 가산절천  | 청풍면    | 장선리 140-1  | 청풍면 | 장선리 107    | 0.64        | 장선천 |    |  |  |  |
| 150 | 가산골천  | 청풍면    | 장선리 257-3  | 청풍면 | 장선리 185    | 0.93        | 장선천 |    |  |  |  |
| 151 | 어리실천  | 청풍면    | 장선리 산4     | 청풍면 | 장선리 28     | 1.31        | 장선천 |    |  |  |  |
| 152 | 산저터천  | 청풍면    | 장선리 247    | 청풍면 | 장선리 장선천    | 0.94        | 장선천 |    |  |  |  |
| 153 | 부산천   | 청풍면    | 부산리 166    | 청풍면 | 부산리 23     | 2.11        | 장선천 |    |  |  |  |
| 154 | 기소골천  | 금성면    | 활산리 449    | 청풍면 | 부산리 64     | 5.88        | 장선천 |    |  |  |  |
| 155 | 다락골천  | 금성면    | 활산리 152    | 청풍면 | 부산리 68     | 14.97       | 장선천 |    |  |  |  |
| 156 | 자재기천  | 금성면    | 활산리 211    | 금성면 | 활산리 235    | 1.06        | 장선천 |    |  |  |  |
| 157 | 황골천   | 청풍면    | 황석리 647    | 청풍면 | 황석리 618    | 1.07        | 장선천 |    |  |  |  |
| 158 | 월굴천   | 금성면    | 월굴리 4      | 금성면 | 월굴리 477    | 4.49        | 고교천 |    |  |  |  |
| 159 | 대사천   | 금성면    | 사곡리 541    | 금성면 | 구룡리 35     | 25.41       | 고교천 |    |  |  |  |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160 | 대사창천  | 금성면    | 사곡리 480   | 금성면 | 사곡리 234   | 1.15        | 고교천 |    |  |  |  |
| 161 | 소사창천  | 금성면    | 사곡리 53    | 금성면 | 사곡리 83    | 0.67        | 고교천 |    |  |  |  |
| 162 | 진리천   | 금성면    | 진리리 34    | 금성면 | 진리리 337   | 1.35        | 고교천 |    |  |  |  |
| 163 | 재공천   | 금성면    | 구룡리 93    | 금성면 | 구룡리 24    | 1.66        | 고교천 |    |  |  |  |
| 164 | 윌립천   | 금성면    | 윌립리 642   | 금성면 | 윌립리 476   | 8.82        | 고교천 |    |  |  |  |
| 165 | 끌말천   | 금성면    | 윌립리 284   | 금성면 | 윌립리 476   | 0.48        | 고교천 |    |  |  |  |
| 166 | 윌립천   | 금성면    | 윌립리 50    | 금성면 | 윌립리 309   | 3.93        | 고교천 |    |  |  |  |
| 167 | 선녀골천  | 금성면    | 양화리 522   | 금성면 | 양화리 796   | 2.88        | 고교천 |    |  |  |  |
| 168 | 양화천   | 금성면    | 양화리 478-3 | 금성면 | 양화리 291   | 2.48        | 고교천 |    |  |  |  |
| 169 | 깊으실천  | 금성면    | 양화리 94    | 금성면 | 양화리 367   | 1.76        | 고교천 |    |  |  |  |
| 170 | 독바우천  | 금성면    | 양화리 893-1 | 금성면 | 양화리 796   | 0.59        | 고교천 |    |  |  |  |
| 171 | 개골천   | 금성면    | 포전리 48    | 금성면 | 포전리 고교천   | 8.6         | 고교천 |    |  |  |  |
| 172 | 중전천   | 금성면    | 중전리 산35   | 금성면 | 중전리 고교천   | 4.72        | 고교천 |    |  |  |  |
| 173 | 포전천   | 금성면    | 포전리 104   | 금성면 | 포전리 244   | 5.35        | 고교천 |    |  |  |  |
| 174 | 대장천   | 금성면    | 대장리 275-1 | 금성면 | 대장리 60    | 5.1         | 충주호 |    |  |  |  |
| 175 | 곰바위천  | 금성면    | 성내리 17    | 금성면 | 성내리 충주호   | 1.43        | 충주호 |    |  |  |  |
| 176 | 학현천   | 청풍면    | 학현리 94    | 청풍면 | 도화리 충주호   | 28.99       | 충주호 |    |  |  |  |
| 177 | 초경동천  | 수산면    | 상천리 102   | 수산면 | 상천리 133   | 13.7        | 충주호 |    |  |  |  |
| 178 | 상천천   | 수산면    | 상천리 263   | 수산면 | 상천리 379   | 3.55        | 충주호 |    |  |  |  |
| 179 | 앞실천   | 수산면    | 천곡리 209   | 수산면 | 천곡리 103   | 1.94        | 충주호 |    |  |  |  |
| 180 | 도전천   | 수산면    | 도전리 182-1 | 수산면 | 도저리 92    | 2.98        | 충주호 |    |  |  |  |
| 181 | 구곡천   | 수산면    | 구곡리 263   | 수산면 | 구곡리 103   | 3.56        | 충주호 |    |  |  |  |
| 182 | 구곡1천  | 수산면    | 구곡리 31    | 수산면 | 구곡리 113   | 0.49        | 충주호 |    |  |  |  |
| 183 | 실리곡천  | 청풍면    | 실리곡리 7    | 청풍면 | 실리곡리 충주호  | 0.6         | 고명천 |    |  |  |  |
| 184 | 본동천   | 수산면    | 고명리 553   | 수산면 | 고명리 202   | 1.94        | 고명천 |    |  |  |  |
| 185 | 연론천   | 청풍면    | 연론리 438   | 청풍면 | 연론리 충주호   | 3.5         | 고명천 |    |  |  |  |
| 186 | 끌안천   | 한수면    | 덕곡리 527   | 한수면 | 덕곡리 638   | 2.39        | 고명천 |    |  |  |  |
| 187 | 갈무리정천 | 한수면    | 덕곡리 520   | 한수면 | 덕곡리 328   | 25.72       | 고명천 |    |  |  |  |
| 188 | 산곡천   | 덕산면    | 신현리 714-3 | 덕산면 | 신현리 911-1 | 1.33        | 성천  |    |  |  |  |
| 189 | 신촌말천  | 덕산면    | 신현리 140   | 덕산면 | 신현리 1019  | 1.04        | 성천  |    |  |  |  |
| 190 | 곡현천   | 덕산면    | 신현리 1111  | 덕산면 | 신현리 397   | 4.09        | 성천  |    |  |  |  |
| 191 | 심목실천  | 덕산면    | 신현리 63    | 덕산면 | 신현리 397   | 0.25        | 성천  |    |  |  |  |

## 소하천

| 연번  | 소하천명  | 소하천 구간 |            |     |           | 유역면적<br>(㎢) | 수계명 | 비고 |  |  |  |
|-----|-------|--------|------------|-----|-----------|-------------|-----|----|--|--|--|
|     |       | 시 점    |            | 종 점 |           |             |     |    |  |  |  |
|     |       | 읍면     | 리동         | 읍면  | 리동        |             |     |    |  |  |  |
| 192 | 차끌천   | 덕산면    | 성암리 98-2   | 덕산면 | 성암리 410   | 2.62        | 성천  |    |  |  |  |
| 193 | 달통실천  | 덕산면    | 월농리 1013   | 덕산면 | 성내리 467   | 3.51        | 성천  |    |  |  |  |
| 194 | 와돈지천  | 덕산면    | 선고리 1382   | 덕산면 | 선고리 성천    | 2.33        | 성천  |    |  |  |  |
| 195 | 고목천   | 덕산면    | 선고리 1500   | 덕산면 | 선고리 1566  | 3.45        | 성천  |    |  |  |  |
| 196 | 퇴골천   | 덕산면    | 선고리 567    | 덕산면 | 선고리 784   | 0.84        | 성천  |    |  |  |  |
| 197 | 다락골천  | 덕산면    | 도기리 69     | 덕산면 | 도기리 292   | 3.81        | 성천  |    |  |  |  |
| 198 | 대동천   | 덕산면    | 도기리 산102-4 | 덕산면 | 도기리 성천    | 2.54        | 성천  |    |  |  |  |
| 199 | 양주동1천 | 덕산면    | 도기리 658    | 덕산면 | 도기리 성천    | 6.51        | 성천  |    |  |  |  |
| 200 | 단지실천  | 수산면    | 대전리 46     | 수산면 | 대전리 876   | 4.46        | 수산천 |    |  |  |  |
| 201 | 대전천   | 수산면    | 대전리 713    | 수산면 | 대전리 2     | 23.27       | 수산천 |    |  |  |  |
| 202 | 수리천   | 수산면    | 수리리 281    | 수산면 | 수리리 323-3 | 5.16        | 수산천 |    |  |  |  |
| 203 | 짚실천   | 수산면    | 수리리 473    | 수산면 | 수리리 361   | 0.53        | 수산천 |    |  |  |  |
| 204 | 수래골천  | 수산면    | 수리리 674    | 수산면 | 수곡리 291   | 5.33        | 수산천 |    |  |  |  |
| 205 | 불그실천  | 수산면    | 계란리 67     | 수산면 | 수곡리 102   | 3.14        | 수산천 |    |  |  |  |
| 206 | 가느실천  | 수산면    | 계란리 67     | 수산면 | 계란리 193   | 1.21        | 수산천 |    |  |  |  |
| 207 | 계란천   | 수산면    | 적곡리 1108   | 수산면 | 계란리 산42-2 | 37.38       | 수산천 |    |  |  |  |
| 208 | 내리천   | 수산면    | 내리리 17-1   | 수산면 | 수산리 수산천   | 2.66        | 수산천 |    |  |  |  |
| 209 | 야미교천  | 수산면    | 내리리 317-1  | 수산면 | 수산리 수산천   | 1.69        | 수산천 |    |  |  |  |
| 210 | 끌안천   | 수산면    | 수산리 552    | 수산면 | 수산리 수산천   | 0.3         | 수산천 |    |  |  |  |
| 211 | 내동천   | 수산면    | 내동리        | 수산면 | 수산리 충주호   | 2.05        | 수산천 |    |  |  |  |
| 212 | 한길가천  | 수산면    | 오타리 383    | 수산면 | 오타리 330   | 25.5        | 수산천 |    |  |  |  |
| 213 | 매차풀천  | 수산면    | 오타리 202-1  | 수산면 | 오타리 316   | 2.74        | 수산천 |    |  |  |  |
| 214 | 숫갓천   | 한수면    | 탄지리 19     | 한수면 | 탄지리 충주호   | 2.89        | 광천  |    |  |  |  |
| 215 | 음지말천  | 덕산면    | 도전리 1301   | 덕산면 | 도전리 1660  | 2.8         | 광천  |    |  |  |  |
| 216 | 나실천   | 덕산면    | 도전리 1360   | 덕산면 | 도전리 146-1 | 2.99        | 광천  |    |  |  |  |
| 217 | 아랫말천  | 덕산면    | 월악리 803-5  | 덕산면 | 월악리 611   | 20.18       | 광천  |    |  |  |  |
| 218 | 넓은내천  | 덕산면    | 억수리 1062   | 덕산면 | 억수리 1104  | 1.61        | 광천  |    |  |  |  |
| 219 | 사시리천  | 덕산면    | 억수리 378    | 덕산면 | 억수리 304-4 | 2.22        | 광천  |    |  |  |  |
| 220 | 억동천   | 덕산면    | 억수리 273    | 덕산면 | 억수리 214   | 1.28        | 광천  |    |  |  |  |
| 221 | 덕주골천  | 한수면    | 송계리 산1-1   | 한수면 | 송계리 129   | 9.74        | 동달천 |    |  |  |  |
| 222 | 꼴미천   | 한수면    | 송계리 1102   | 한수면 | 송계리 996   | 14.9        | 동달천 |    |  |  |  |
| 223 | 구례골천  | 한수면    | 송계리 881    | 한수면 | 송계리 773   | 7.16        | 동달천 |    |  |  |  |

### 붙임 3.

## 시내동 상습 침수지역 현황

| 위치                     | 현황   | 원인 및 문제점   | 대책   |
|------------------------|--|--|--|
| ① 교동 제천운수 주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지역 일대의 우수 및 오수가 제천운수 부지내로 통과된 박스로 연결되어 대로를 횡단,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미처 배제되지 않고 제천운수 주변 상습침수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내로서 고암천과 연결되는 세천 단면협소로 우수배제 불량 (도로철도box, 소하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지역 우수의 분산 처리를 위한 추가시설물 신설 검토</li> <li>▶ 기존시설 및 세천 개량 검토</li> </ul> |
| ② 교동 장락정미소 (아세아주택단지 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침수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내로서 주변지형상 본건물이 최저지대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반고 상향조정 필요</li> </ul>  |
| ③ 교동 삼화 후형 기와공업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지대로 집중호우시 침수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내로서 주변지형상 본건물이 최저지대이며,</li> <li>▶ 본공장 상류지역에서 본공장 까지의 배수시설물이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우수관거 시설물 설치추진</li> </ul>  |

| 위 치                             | 현 황          | 원인 및 문제점  | 대 책   |
|---------------------------------|--------------|---|---|
| ④ 고암모산동<br>(구)고암기사식당앞           |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외로서</li> <li>▶ 고암천과 연결되는 둔전골 소하천 단면협소로 우수배제 기능 상실<br/>(도로·철도box, 소하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시설 및 소하천 개량 전면 재검토</li> </ul> <p>※ 둔전골 소하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장 : L=1720m</li> <li>└ 유역면적 : 1.75km<sup>2</sup></li> <li>└ 하 폭 : 3~7m</li> </ul> |
| ⑤ 고암모산동<br>당모루부락앞<br>(자동차학원 주변) |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내로서</li> <li>▶ 고암천과 연결되는 무덤실 소하천 단면협소로 우수배제 가능상실<br/>(도로·철도box, 소하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시설 및 소하천개량 전면 재검토</li> </ul> <p>※ 무덤실 소하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장 : L=1450m</li> <li>└ 유역면적 : 1.39km<sup>2</sup></li> <li>└ 하 폭 : 3~8m</li> </ul>  |
| ⑥ 고암모산동<br>죽하마을 주변              |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구역내로서</li> <li>▶ 고암천과 연결되는 세천 단면협소로 우수배제 기능상실<br/>(도로·철도box, 소하천)</li> </ul>       | ▶ 기존시설 및 세천 개량 검토   |

| 위 치                | 현 황  | 원인 및 문제점  | 대 책                                    |
|--------------------|--|---|--|
| ⑦ 고암모산동<br>버섯마을 주변 |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 ▶ 하수처리구역내로서<br>▶ 고암천과 연결되는 세천 단<br>면협소로 우수배제 기능상<br>실   | ▶ 기존시설 및 세천 개량<br>검토                   |
| ⑧ 용두동 이화관<br>뒤편    | ▶ 지형상 저지대인 관계로 집<br>중호우시 도로 및 주택 마당<br>까지 일시침수 발생<br><br>▶ 본지역 침수해소를 위하여<br>D1000mm 관로를 하소천<br>하류 200m 지점까지 매설<br>하여 방류하고 있으나 일시<br>적인 집중호우시 다소 발생<br>되나 큰피해는 없음 | ▶ 하수처리구역내로서<br>▶ 저지대인 관계로 하천수위<br>상승시 본지역 일시적 침수        | ▶ 기존관로 통수능력 확보<br>를 위한 하수관거 준설<br>지속시행 |
| ⑨ 화산동 대륙다방앞<br>대로변 | ▶ 집중호우시 도로내 우수가<br>빗물받이로 미처 유입되지<br>못하고 일시 침수발생  | ▶ 하수처리구역내로서<br>▶ 집중호우시 쓰레기등 이물질<br>이 물받이를 막아 통수능력<br>저하 | ▶ 우기대비 주기적인 청<br>소 지속시행                |

| 위 치                           | 현 황  | 원인 및 문제점   | 대 책   |
|-------------------------------|--|--|---|
| ⑩ 화산동<br>농산물 공판장앞<br>대로       | ▶ 집중호우시 도로내 우수가<br>미처 유입되지 못하고 일시<br>침수 발생 | ▶ 기존 관로 통수단면 부족  | ▶ 관로개량 추가 필요  |
| ⑪ 신백두학동<br>모답마을 일부            | ▶ 모답마을의 저지대 2~3가구<br>집중호우시 침수              | ▶ 하수처리구역내로서<br>▶ 마을의 최저지대에서 시작된 하수<br>관로가 고암천에 연결되어있으나<br>하천수위 상승시 통수능력 저하 | ▶ 근본적인 해결은 저지<br>대 2-3가구주변의 성<br>토후 건물신축이 필요함<br><br>▶ 본 구간관로를 하천하류<br>까지 연장시공 검토 |
| ⑫ 신백두학동<br>과선교 주변             | ▶ 일시적 집중호우시 도로 및<br>주변 침수                  | ▶ 하수처리구역내로서<br>▶ 하수관로가 고암천에 연결되어<br>있으나 하천수위 상승시 통수<br>능력 저하               |   |
| ⑬ 봉양읍 학산리<br>목원가든 앞<br>국도 5호선 | ▶ 철도통과로 인한 저지대로<br>집중호우시 침수발생              | ▶ 철도통과높이 문제로 도로<br>를 인상하지 못하여 매년<br>침수                                     | ▶ 대전국토관리청에 지속<br>건의<br>▶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br>지속관리                                     |

# 답변서

|      |                     |
|------|---------------------|
| 질문의원 | 성명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 답변자  | 부시장 김재갑             |
| 제목   | 제천시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 |

## 질문요지

-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의 예산 규모와 보조금 집행현황은?
- 보조금 교부조건 부가 지령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과 사업비 정산 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지출증빙 서류중 법정증빙으로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는?

## 답변내용

- 부시장 김재갑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명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천시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근거해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및 도의 사업별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행자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의 예산규모와 보조금 집행현황은,
  - 예산규모로는 민간경상보조 247개사업 18,125,104천원. 사회단체보조금 62개단체 825,164천원, 민간행사보조 154 개사업 3,430,338천원으로 총 22,380,606천원입니다.
  - 그중 보조사업은 17,717,534천원, 경상경비는 4,663,072천원으로 보조사업이 전체예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8월말 현재 보조금 집행현황은 민간경상보조 11,123,83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634,761천원, 민간행사보조 1,728,060천원으로 예산대비 60%를 집행하였습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 부가지령서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건과 사정변경시 보조결정 변경, 용도외 사용금지, 사업변경시 사전승인, 보조사업실적보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사업성격상 특별한 교부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 및 중앙부처에서 시달 된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 사업비 정산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정산서류 제출, 정산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폐지승인, 사업년도 종료시에 정산검사를 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관계 장부, 서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산검사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이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즉시 반납받고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중 법정증빙으로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는,

-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사업비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아 사업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증빙서류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거 발급된 정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보조금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관련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보조단체와 지원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거 제천시 농정심의회(분과별)에서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와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5천만원 이상 토목, 건축 등 공사 집행관련 보조금을 대상으로 감사부서에서 주요사업심사단을 구성해 설계의 적정성, 사업금액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교부하고 있으며
-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07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전 보조사업에 대해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워도 집행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제천시 보조사업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서는 부시장으로서 보다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갖고 정산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법지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적극 독려하고 수시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서

- 질문의원 : 성명중 의원(산업건설위원회)
- 답변자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 제목 : 공사관련 지출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 질문요지
- 2006년부터 계속사업 포함하여 현재까지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발주 총 건수 및 금액은?
  - 산업안전보관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용항목과 근거는?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사업장과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지도계약, 횟수 등을 비롯한 세부기준은?
  - 퇴직공제부금과 환경보존비의 계상목적과 기준, 지출가능분야는?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입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명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관련 지출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질문하신 2006년부터 계속사업 포함하여 현재까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발주 총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1> 내용과 같이 2006년에 190건/98,152,919천원, 2007년에 201건/49,831,488천으로 총 391건/147,984,407천원이며 각 팀별 공사 현황은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06~2007 4천만원 이상 공사현황>**

| 년도별  | 건수  | 금액(천원)      | 비 고              |
|------|-----|-------------|------------------|
| 계    | 391 | 147,984,407 | 팀별 발주현황<br>불임1참조 |
| 2006 | 190 | 98,152,919  |                  |
| 2007 | 201 | 49,831,438  |                  |

-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용항목과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용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 2007-4호 2007.02.21)호에 의거 주요 사용항목은
  - 가.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 나. 안전시설비 등
  - 다. 개인보호구 및 안구장비구입 등
  - 라.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마.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바.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 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아. 본사 사용비 등이며 항목별 사용 내역은 <붙임2>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사업장과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계약, 횟수 등을 비롯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은 발주청에서 설계(원가계산작성)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노동부고시(제2007-4호, 2007.02.21)의 규정에 의거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붙임2 참고>에 의하여 계상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 공사 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에 대한 규정은 노동부고 제2005-32호(2005.12.05)에 의거 삭제(폐지)되어, 현재 기술지도는 월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퇴직공제부금과 환경보존비의 계상목적과 기준, 지출가능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퇴직공제부금의 계상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서 퇴직공제부금의 계상 기준은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 나.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업입니다.

○ 또한 환경보존비의 계상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을 위하여 환경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것으로 계상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제3항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가. 도로 : 0.9% 이상
- 나. 플랜트 : 0.4% 이상
- 다. 지하철 : 0.5% 이상
- 라. 철도 : 1.5% 이상
- 마. 상하수도 : 0.5% 이상
- 바.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 사. 댐 : 1.1% 이상
- 자. 택지개발 : 0.6% 이상
- 아.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 자. 주택(신축) : 0.3% 이상
- 차. (9), (10) 외 건축 : 0.5% 이상

또한 환경보존비의 지출가능 분야는 다음 <표 2> 와 같습니다.

&lt;표2.환경보전비로 지출가능분야&gt;

| 관련 법령    |                 |  |
|----------|-----------------|--|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 먼지(막),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li> <li>(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li> </ul> |
| 소음·진동규제법 | 소음·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li> </ul>         |
| 폐기물관리법   | 건설 폐기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li> </ul>                                 |
|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오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li> </ul>               |

\*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교육 및 훈련비, 환경관리 시험, 측정, 검사비, 환경홍보물, 환경전담관리자 인건비, 기타 환경관리비용

□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시 원가계산에 계상되는 법적관리비인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의 계상목적, 기준 및 근거 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시 일부 이에 대한 정산 및 계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공사 업무 추진시 현장지도 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 건설업무 관련팀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1. 설계시 원가계산상의 적정성
2. 사업 준공시 각종 증빙서와 설계시 반영된 내용과의 확인
3. 공사감독 공무원의 수시 현장 방문으로 기술지도에 대한 이행사항 수시확인 점검
4. 건설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와 업무연찬, 교육 및 상호간 정보공유토록 팀장에게 임무 부여
5. 항목별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성 등을 더욱 관심 있게 확인 교육, 공유토록 하겠으며

○ 이러한 약속 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 설계시 계상된 법적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관련 지출경비의 지도, 감독, 정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임1 각 팀별 사업 발주 현황〉

|           | 계   | 2006년 |       | 2007년       |            |
|-----------|-----|-------|-------|-------------|------------|
|           |     | 2006년 | 2007년 | 2006년       | 2007년      |
| 총계        | 391 | 190   | 201   | 147,984,407 | 98,152,919 |
| 지역경제팀     | 2   | 2     | 1     | 1,300,000   | 1,300,000  |
| 자치운영팀     | 2   | 1     | 1     | 1,042,631   | 450,431    |
| 정보통신팀     | 1   | 0     | 1     | 308,645     | 592,200    |
| 혁신홍보팀     | 1   | 0     | 1     | 92,000      | -          |
| 문화체육팀     | 10  | 8     | 2     | 2,906,036   | 2,493,079  |
| 경로재활팀     | 3   | 2     | 1     | 3,284,388   | 1,634,388  |
| 여성유소년팀    | 6   | 6     | 0     | 2,796,776   | 2,796,776  |
| 관광팀       | 5   | 2     | 3     | 3,106,855   | 1,891,432  |
| 환경보호팀     | 2   | 1     | 1     | 1,215,423   | 183,895    |
| 생활환경팀     | 15  | 6     | 9     | 42,093,519  | 41,257,399 |
| 산림관리팀     | 34  | 8     | 26    | 5,032,194   | 1,550,180  |
| 지역개발팀     | 80  | 45    | 35    | 9,918,078   | 5,185,369  |
| 도로하천팀     | 100 | 38    | 62    | 25,514,451  | 7,248,070  |
| 도시관리팀     | 31  | 16    | 15    | 8,181,945   | 5,816,670  |
| 교통팀       | 24  | 15    | 9     | 2,625,605   | 1,933,597  |
| 재난관리팀     | 6   | 2     | 4     | 5,680,886   | 150,000    |
| 보건소       | 5   | 3     | 2     | 1,138,828   | 710,360    |
| 농축유통팀     | 1   | 0     | 1     | 43,230      | 428,468    |
| 기술개발팀     | 3   | 0     | 3     | 357,029     | -          |
| 환경관리사업소   | 26  | 15    | 11    | 26,853,113  | 20,190,674 |
| 문화체육시설관리소 | 7   | 5     | 2     | 814,152     | 6,662,439  |
| 수도사업소     | 27  | 15    | 12    | 4,710,151   | 2,837,865  |
|           |     |       |       |             | 1,872,286  |

〈붙임2〉 안전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세부 내역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고시 제2007 - 4호 )

2007. 2. 21

노 동 부

## 안전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1. 안전관리자 등<br>의 인건비 및<br>각종 업무수<br>당 등 | <p>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li> <li>※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달리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li> </ul> <p>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li> <li>(2) 고정식크레인·리프트·콘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li> <li>(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li> <li>(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li> <li>(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li> </ol> <p>※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p> <p>다.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0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 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용 리프트·콘돌라를 이용한 작업</li> <li>(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li> <li>(3)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li> <li>(4) 훑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li> <li>(5)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li> </ol>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 작업</p> <p>(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p> <p>(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p> <p>(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br/>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br/>변경작업</p> <p>(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br/>작업</p> <p>(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p> <p>(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p> <p>(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br/><u>작업</u></p> <p>(14) 기타 <u>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u><br/>※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p> <p>라.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br/>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br/>※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p> |
| 2. 안전시설비 등 | <p>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p> <p>(1) 안전난간 및 발끌막이판</p> <p>(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p> <p>(3) 안전대 결이설비</p> <p>(4) 개구부 덮개</p> <p>(5) 위험부위 보호덮개</p> <p>(6)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br/>※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p> <p>(7)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br/>※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호선반</li> <li>(2) 낙하물방지망, <u>캡폼 및 개구부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u></li> <li>(3) 경사법면 보호망(덮개)</li> <li>(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li> </ul> <p>다.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점보<br/>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펜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p> <p>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li> <li>(2)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li> <li>(3)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li> <li>(4)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li> </ul> <p>마.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 표지판 및 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br/>※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p> <p>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진설비, 방음설비</li> <li>(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li> <li>(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li> </ul> <p>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 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li> </ul>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2)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br/> (3)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br/> (4) 연삭기의 덮개<br/> (5)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br/>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br/> (7)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br/> (8)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p> <p>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br/>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p> <p>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p> <p>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p> <p>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 방지방책 등<br/>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p> <p>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p> <p>하. 가설전선의 괴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p> <p>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p> <p>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p> <p>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p> <p>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며. 기계·장비 등의 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p> <p>버.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절림 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p> <p>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p> <p>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p> <p>저.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p> <p>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p> <p>커.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br/>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시설 등)</p> |
|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p>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p> <p>(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 보호구</p> <p>(3) 용접용토시(자켓), <u>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u>, 신호수용 반사조끼<br/>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p> <p>(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br/> ※ 순시선, 구명정 등을 제외</p> <p>(5) 안전화 전조기</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규정에 따라 성능검정 및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p> <p>다.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p> <p>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u>절연의 및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u><br/>※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p> <p>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p> <p>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p>   |
| 4. 사업장의 안전 진단비 등 | <p>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p> <p>(1)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p> <p>(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br/>※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p> <p>나.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p> <p>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u>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u></p> <p>(1) 산소농도측정기</p> <p>(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p> <p>(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p> <p>(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p> <p>(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p> <p>(6)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br/>※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p> <p>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p> <p>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p> <p>사.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p> <p>아.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p> <p>자.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p> |
|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p>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u>신규 및 보수교육</u></p> <p>나. 안전관리자 <u>신규 및 보수 교육</u></p> <p>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p> <p>(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p> <p>(2) 근로자 정기교육</p> <p>(3) 신규채용시 교육</p> <p>(4) 특별안전교육 (영 <u>별표 2</u>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p> <p>(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p> <p>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p> <p>(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p> <p>(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u>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u>)</p> <p>(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p> <p>(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p> <p>(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p> <p>(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p> <p>(7)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p> |
|     | <p>바. 교육교재, 교육용 팜풀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p>   |
|     | <p>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p>  |
|     | <p>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p>   |
|     | <p>자.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p> <p>※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p>  |
|     | <p>차.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p>  |
|     | <p>카.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p> <p>※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p>   |
|     | <p>타.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파.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br/>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p> <p>하. 안전 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br/>       출장비 (경학포함)</p> <p>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p> <p>너. 안전기원체에 소요되는 비용 (연 2회 이하)<br/>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p> <p>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br/>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br/>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br/>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br/>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p> <p>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p> <p>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버.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br/>       소요되는 비용</p> |
|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 <p>가.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p> <p>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br/>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p> <p>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br/>       소요되는 비용</p>   |

| 항 목             | 사 용 내 역   |
|-----------------|---|
|                 | <p>라.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br/>※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p> <p>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p> <p>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p> <p>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p> <p>아.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br/>※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p> |
|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input type="radio"/>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8. 본사 사용비       | <input type="radio"/>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 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붙임3〉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7 - 4호 )

2007. 2. 21

노 동 부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공사종류      | 대상액     |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50억 원 이상 |
|-----------|---------|---------|------------------|---------|----------|
|           |         |         | 비율(X)            | 기초액(C)  |          |
| 일반건설공사(갑) | 2.48(%) | 1.81(%) | 3,294천 원         | 1.88(%) |          |
| 일반건설공사(을) | 2.66(%) | 1.95(%) | 3,498천 원         | 2.02(%) |          |
| 중 건 설 공 사 | 3.18(%) | 2.15(%) | 5,148천 원         | 2.26(%) |          |
| 철도·궤도신설공사 | 2.33(%) | 1.49(%) | 4,211천 원         | 1.58(%) |          |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24(%) | 0.91(%) | 1,647천 원         | 0.94(%) |          |

# 답변서

|      |                  |
|------|------------------|
| 질문의원 |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
| 답변자  | 시장 엄태영           |
| 제목   | 팀제 개편에 대하여 ?     |

질문요지

- 팀제 전환이후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 진정 시민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중대하기 위하여 항상 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팀제 전환 이후 장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팀제 전환 이후 장점 즉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답변서

- 전국 최초로 고객 및 성과중심의 자치형 제천 *Nice* 팀제가 출범 8개월째를 맞아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계속되는 가운데 빠르게 정착되고 있어 선점효과는 물론 성공사례 파급의 모델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보강된 실무인력의 전진배치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계층 즉 결재단계 축소와 팀장이하 전결권의 대폭위임에 따른 신속한 의사 결정, 자기완결적 업무처리 범위의 확대로 인한 직무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 수평적 의사결정에 의한 행정이 수행되므로 사람에 의한 조직운영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합리적 행정운영이 가능해져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므로 신뢰행정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 팀원 개개인이 자율과 창의에 의한 역량발휘가 가능해져 학습하는 공직기반의 조기구축과 팀제가 정착단계로 들어서면 전직원이 올라운드 플레이어형의 핵심요원으로 인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답변서

□ 다음은 팀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팀제 개편 당시에도 거명되었던 사안으로 1개 본부당 소속 팀수가 과다하여 통솔범위의 한계 상황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직무몰입도가 낮아져 팀제 본연의 성과창출과 효율성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기존의 계급제 조직과 비교해서 팀제가 고객관점을 가장 중시하며 수평적, 합리적, 자율적 의사결정을 강점으로 한 팀장과 팀원간에 상호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팀이 운영된다는 본질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의 획기적 전환이 아직까지는 일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팀내에 기존체제상의 2~3개 담당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팀전체의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측면이나 팀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직무 및 역할부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종전의 담당 조직의 틀을 탈피하지 못하여 팀결속력을 저해하고 유연조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서

○ 팀제 초창기에 이해도와 수용성 부족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6급이하(파트장 포함) 팀원 개개인의 경력과 능력에 적합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여 팀전체의 인력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특히 7급이하 팀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귀결되어 내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팀제의 근본정신에도 배치되는 역기능 현상도 있다 하겠습니다.

□ 끝으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형 전면 팀제를 도입하여 순항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기간이 만 7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공직행태가 기존의 계급제 조직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나 통제중심으로 굳어버린 기존의 공직문화가 고객과 성과지향의 수평적 역할중심 조직으로 체질이 개선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자치형 팀제의 빠른 안착과 모델 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편된 조직의 외형에 걸맞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시책과 성과평가제도 도입,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 답변서

- 가장 시급히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본부 소속 팀수 과다 편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4본부 체제로의 확대 계획을 가지고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8. 1월부터 실행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팀제 전반에 걸쳐 팀제의 이해도나 수용성 부족, 팀장·팀원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나 업무분장 부적합, 파트장의 비효율적 운영, 팀중심의 성과창출이나 인력의 풀 관리 및 배치 불합리, 팀내 업무의 순환 담당제의 필요성 인식부족 등 새로운 제도인 팀제시행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팀웍강화 차원에서 팀별 자체컨설팅 (상·하반기 각 1회)을 실시하여 바르게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 모쪼록 전국적인 관심과 화제거리로 떠오른 제천 Nice 팀제가 기대 이상의 창조적인 조직성과를 창출하며 내실있는 자치형 팀제로 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언제나 처음처럼 팀제의 기본정신과 본질에 충실하면서 행정의 고객인 시민을 위한 성과형 조직과 인력운영에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답변서

○ 앞으로 자치형 팀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자치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박성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서

|      |                               |
|------|-------------------------------|
| 질문의원 |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
| 답변자  | 시장 엄태영                        |
| 제목   |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현황은? |

### 질문요지

-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현황은?

### 답변내용

- 시장 엄태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결산은 1회계년도 내의 세입과 세출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세입과 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운영에 대한 행정적 성과를 분석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에 의거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해 박성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25개부서 37개사업에서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산검사 종료 후 6월초에 각 부서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았으며 8월말 현재로 조치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결산검사 지적사항 37건중 9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반영 계획중이며, 20건은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2건은 특별 회계 존치관계로 계속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 주요 조치현황으로, 먼저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벚꽃축제와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기간중 설문을 통하여 홍보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효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홍보계획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지 하자보수 시공」 부분은 7월 3일 잔디 및 측백나무 고사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하였고 7월 27일 야영 공원내 자연석쌓기 일부 재시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신문구독방법 개선」 등 6개사업에서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반영중인 사업은,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책관성 있는 기준 모색』은 금년 하반기중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방법을 확정하여 2008년

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은 현재 보건지소의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여 4/4분기 의약품 구입시 마련된 기준안을 토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 「금연보조제 구입방법 개선」 등 3개사업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시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 추진중인 사업으로,

-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회계지도 점검강화 및 업무분장 재검토」는 관내 57개 보육시설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으며 직원을 충원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대집행사업 보수공사 시행」은 2007. 7. 18일 하자보수 점검결과, 금성면 활산리 산지사방대집행 복구공사의 경우 전석쌓기 외 10개공종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백운면 방학리 대집행 복구공사는 돌수로외 5개공종의 하자가 발생하여 7월 26일 시공자인 (주)환희임업에 2007. 10.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자보수 공사를 명령하였습니다.
- 「에코세라피 민간위탁사업 지구지정」은 4월 16일 재정경제부에 선특구 지정신청을 하였고 7월 5일 관계부처와 1차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의 특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9월중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천시장학회운영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제정 후 장학회 이사 개편 및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이외 「어린이교통체험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등 15개사업은 조속히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관리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편입」 부분은 제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주택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제6조에 의한 용도 이외는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읍자금을 2019. 10월 까지 상환중에 있으므로 주택특별회계 폐지는 연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 「문화마을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편입」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특정구역에 한정된 사업비 이므로 특성상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즉시 내년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우나, 기금의 운영상황을 연차 검토하여 처리 코자 합니다.
-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조치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확인으로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1  | 어린이교통체험조성사업 자금없는 이월 사업비 조속 확보  | 추진중  | 미교부 예산수령을 위해 경찰청 관계자와 협의중<br>(미입금액-2억원)  | 교통팀    |
| 2  | 음식물수거수수료 조정(인상)검토              | 추진중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 원칙 강화 및 지자체 청소예산 자립도를 고려한 주민부담을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봉투 가격 인상 및 음식물수거수수료 조정 검토중 | 생활환경팀  |
| 3  | 보육시설 정기적인 회계지도 점검강화 및 업무분장 재검토 | 추진중  | 관내 57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중이며 직원이 충원 되는대로 업무분장 계획임.  | 여성유소년팀 |
| 4  | 교육경비보조금 정산 소홀                  | 완료   | 법인카드사용 및 세금계산서 징구 등 보조사업 정산철저 지시   | 평생학습팀  |
| 5  | 축제추진위원회 정산소홀, 회계전반 지도감독        | 추진중  | 보조금집행유의사항, 회계처리 기준통보(6.4). 지속적 지도감독으로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축제영상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6  | 저온저장시설설치사업 정산소홀, 지도감독 강화. 사업추진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 추진중  | 기준설계도서 활용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음.<br>지역업체 선정도록 권고하겠음.  | 농축유통팀              |
| 7  | 간판정비사업 자부담관계 불명확. 지도 감독 강화                  | 완료   | 보조금 정산관련 직원교육 실시(6.4)<br>향후 보조사업 추진시 철저를 기하겠음.   | 건축팀                |
| 8  | 댐지원사업비 중 특수물품(안마의자 등) 구입건에 대한 보조금 검사 및 조사요망 | 완료   | ○ 2006댐지원사업비(특수물품구입건)집행실태 감사실시<br>- 기간 : 2007. 6. 25 ~ 29 (5일간)<br>- 대상 : 금성면외 4개읍면(13개소 현장확인)<br>- 결과 : 보조사업 일부가 목적외 집행된 부분에 대해 이후 철저한 정산검사도록 주의 조치하고 향후 댐 지원사업 선정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분석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사업추진부서에 의견제시 | 법무감사팀<br>(답변자료 첨부) |
| 9  | 댐지원사업비 효과 극대화 및 정산철저 -지역별 물품 구입가격 차이 및 방지   | 반영계획 | 물품구입시 견적서 사전징구, 성능검토 등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음.   | 경로재활팀              |
| 10 | 산촌종합개발사업지 하자보수 시공 철저                        | 완료   | 재시공 공문 발송(6. 8) 및 하자보수 완료<br>잔디 및 측백나무고사 재시공(7. 3)<br>야영공원내 자연석쌓기 일부 재시공(7. 27)  | 지역개발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11 | 노인사랑병원 적자발생에 따른 대책강구<br>- 법인 분리운영 건의 | 추진중  | 독립법인으로 분리운영 권장 공문서 발송   | 보건운영팀         |
| 12 |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 지도감독 철저                 | 추진중  | 년1회 정기감사 및 수시 업무지도로 회계집행 및 운영사항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시립도서관         |
| 13 | 산림대집행사업 보수공사 시행                      | 추진중  | 2007. 7. 18일 하자보수 점검결과 금성면 활산리 산지사방대집행 복구공사의 경우 전석쌓기 외 10개 공종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백운면 방학리 대집행 복구공사의 경우 돌수로외 5개 공종의 하자가 발생되어 2007. 7. 26일 시공자인 (주)환희임업에 2007. 10. 31일까지 완료토록 하자보수공사 명령 | 산림관리팀         |
| 14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사전 성과검토 분석 후 시행          | 반영계획 | 사전 성과검토를 충분히 하겠으며 기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지역경제팀<br>교통 팀 |
| 15 | 청풍명월하키장 상단부분 보수공사 시행                 | 추진중  | 시공자로부터 누수원인 불규명으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건축TF팀의 자문을 받아 처리계획 및 대책 모색중  | 문화체육<br>시설관리소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16 |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금 산출방법 개선           | 추진중  |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청구시 벽지노선구간 및 손실미보상 운행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기준으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산출방식에 의거 결손금 산출예정(12월 집행예정)           | 교통 팀 |
| 17 | 재정적자지원금 산출방법 개선, 비수익 노선결손금 명칭 변경 | 추진중  | 재정지원금 정산시 집행내역 검사 철저이행.<br>2008년부터 비수익노선결손금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사용하겠음.                                | 교통 팀 |
| 18 | 공영버스지원시 부대비용 자부담처리로 개선           | 추진중  | 버스구입비 외 부대비용(제세공과금 등)은 회사가 부담도록 조치하겠음.  | 교통 팀 |
| 19 | 저상버스 구입보조 대수 지자체에서 결정 토록 정책 건의   | 추진중  | 현재 1대가 격일 운행중. 금년 1대를 추가도입하여 이용실태를 점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 교통 팀 |
| 20 | 시내버스 경영에 대한 개선 권고                | 추진중  |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등 평가 기준을 설정, 이행부진업체는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재정지원 수정계획을 수립, 4/4분기부터 시행예정(8.3일 공문발송) | 교통 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21 |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객관성 있는 기준<br>모색        | 반영계획 | 2007년 하반기중 성과상여금 평가 및 지급방법<br>을 확정, 2008년부터 지급할 예정임.   | 인적자원팀 |
| 22 | 금연보조제 구입방법 개선                     | 반영계획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단가계약)로 분기별 구입<br>토록 개선하겠음.   | 건강증진팀 |
| 23 |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시행               | 반영계획 | 보건지소 운영비 기준마련, 4/4분기 의약품 구<br>입시 마련된 기준안을 토대로 지원예정   | 보건운영팀 |
| 24 | 에코세라피 민간위탁사업 지구지정도록 노력 경주         | 추진중  | 4. 16일 재경부에 선특구 지정신청. 7. 5일 관<br>계부처와 1차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초까지 건교<br>부등과 추가협의. 9월중 특구지정이 될 수 있<br>도록 추진중임 | 한방산업팀 |
| 25 | 학술용역성과품 활용실적 미비. 자체설계<br>확대로 예산절감 | 반영계획 |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조치사항 시달(6. 4)계<br>획수립시 타당성 선검토후 용역을 시행하고 결<br>과물은 사업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 전략사업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26 | 축구공원조성사업 예산낭비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                  | 추진중  | 건축 세부설계용역이 9월초 완료되면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체육팀          |
| 27 | 조건부 투용자사업 조건 충족한 후 사업시행                    | 추진중  | 투용자심사 결과통보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하여 조건 충족 후 시행토록 문서통보 및 강조지시(3회)   | 기획예산팀          |
| 28 | 박달재휴양림 운영방법 개선방법 제안<br>-예비등록제, 독립채산제, 설문조사 | 추진중  | 타시군 조사결과 예비등록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상태로 현재 시행하는 인터넷예약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설문조사는 9~10월중 시행 계획이며 독립채산제는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 산림관리팀          |
| 29 | 매체별 홍보효과 분석요망                              | 완료   | 주요행사 기간중 설문을 통한 홍보 효과 분석 실시(2회/벚꽃축제, 국제음악영화제)  | 혁신풍보팀          |
| 30 |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종합복지관 급여지급 방법 개선                | 완료   | 2007. 5월 퇴직금 원천징수  | 축제영상팀<br>시민복지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31 | 신문구독 방법 개선                   | 완료   |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에서 각 부서별 신문구독 부수조정 실시, 현재 50% 감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혁신풍보팀              |
| 32 | 제천시장학회운영 활성화방안 방법 모색         | 추진중  |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 후 장학회 이사 개편 및 장학기금 모금운동 전개계획  | 평생학습팀              |
| 33 | 번지점프 시설유지비의 위탁사업자로의 변경 (계약서) | 완료   | 번지점프장 위탁계약서 제13조 규정에 의거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였음.  | 관광시설 관리소           |
| 34 | 고용촉진훈련수당 지급대상자 출석확인 방법 개선    | 완료   | 노동부 지침에 의거 직업훈련카드를 발급. 훈련생의 출결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리출석시 훈련생 및 기관의 제재조항이 마련되어 있음. 지속적인 홍보로 부정출석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 지역경제팀              |
| 35 |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미시행               | 추진중  | <p>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관련 위법행위 공무원 문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일 : 2007. 7. 13.</li> <li>- 처분내용 : 경고·훈계등 5명</li> </ul> <p>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추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표준조례안 시달(환경부)</li> <li>- 하수도법시행령 미공포로 조례제정 지역</li> </ul> | 법무감사팀<br>(답변자료 첨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 순번 | 지 적 사 항                  | 조치현황 | 조 치 내 용   | 소관부서  |
|----|--------------------------|------|---|-------|
| 36 | 주택관리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편입 검토 | 추진중  | <p>주택특별회계는 주택법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설치 등) 및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에 의한 용도 이외는 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을 2019. 10월까지 상환중에 있음. 향후 제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특별회계의 존·폐지는 연차적으로 재검토하여 나가겠음.</p> | 시민복지팀 |
| 37 | 문화마을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편입 검토 | 추진중  | <p>문화마을조성사업 후 발생한 수익금으로 특정구역에 한정된 사업비이므로 특성상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2008년 즉시 시행은 곤란하며, 특별회계 운영상황을 연차별로 검토하여 존치여부를 재결정하여 나갈 방침임.</p>   | 지역개발팀 |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     |       |     |      |    |   |
|-----|-------|-----|------|----|---|
| 팀 명 | 법무감사팀 | 회계별 | 일반회계 | 순번 | 8 |
|-----|-------|-----|------|----|---|

### □ 지적(건의)사항

- 2006년도 댐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마을경로당 물품에 대해 현지검사 결과, 같은 물품(예/안마의자)이 마을별로 구입가격 차이가 있으며, 구입된 대부분 물품이 방치 되는 등 사업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집행부에서는 특수물품 구입 분야에 대한 보조금검사와 계약자의 국세납부 등을 재조사하여 시정조치 하기 바람

### □ 조치결과

- 2006 댐지원사업비(특수물품 구입 건)집행실태 감사실시

- 기 간 : 2007. 6. 25 ~ 29(5일간)
- 대 상 : 금성면외 4개 읍면(13개소 현장확인)

#### (결 과)

- ▶ 보조사업 일부가 목적 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 철저한 정산 검사도록 주의 조치하고, 향후 댐 지원사업 선정 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투자분석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사업추진부서에 의견제시

## 2006회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

|     |       |     |      |    |    |
|-----|-------|-----|------|----|----|
| 팀 명 | 법무감사팀 | 회계별 | 특별회계 | 순번 | 35 |
|-----|-------|-----|------|----|----|

### □ 지적(건의)사항

-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있어 조례규정 미 시행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2005. 4. 1.(조례 제683호) 개정하였으나, 일부 항목 (욕탕)을 개정된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 2005. 5월부터 2007. 5월 현재까지 약 287백만원 정도를 과소 징수하였음.

- 이는 하수도 징수기관의 기본업무를 미 이행한 사례이며, 집행부의 확인감사로 문책 및 시정을 요구함

### □ 조치결과

- 하수도사용료 징수 조례개정 관련, 위법행위 공무원 문책  
(문책내용)

| 처분당시<br>소 속 | 직 급  | 성 명  | 문책양정            | 비 고<br>(협의당시 직위) |
|-------------|------|------|-----------------|------------------|
| 전략사업팀       | 토목5급 | 김 기덕 | 주의              | 소장               |
| 송학면         | 행정6급 | 한 광석 | 불문(경고)<br>※표창감경 | 실무담당             |
| 차량등록팀       | 기능9급 | 권순일  | 견책              | 실무자              |
| 환경사업소       | 전기8급 | 이재홍  | 훈계              | 실무자              |
| 환경사업소       | 기능8급 | 박상수  | 훈계              | 실무자              |

# 답변서

|      |                      |
|------|----------------------|
| 질문의원 | 박성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
| 답변자  |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
| 제목   | 제천시 쓰레기 수거 현황 및 대책은? |

## 질문요지

- 자연발생유원지, 도심공원, 공공단지, 유휴지, 이면도로등  
도심전체가 쓰레기로 문제가 심각한데 쓰레기 수거 현황 및  
대책은?

## 답변내용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종섭 제천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성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쓰레기 수거 현황 및 대책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는 8개소가 있으며 그 중 4개소(무암계곡.  
능강계곡. 자라바위. 덕동계곡)는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위탁체결된 곳은 위탁관리자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일  
정 장소에 모아두면 읍면 청소차량이 발생량에 따라 주 3~5  
일 간격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위 턱체결이 안된 4개소(탁사정, 명암계곡, 학현계곡, 취적대) 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청소관리요원을 일시 사역하여 쓰레기 수거와 주변청소를 하고 있으며 읍면 청소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 도심공원은 32개소로 어린이 공원 27개소, 근린공원 5개소로 공원내의 관리는 도심공원 관리인 4명을 투입하여 32개소 공원을 순회하며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용률이 높은 중앙공원, 청전제4어린이 공원은 매일 공원 관리인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공원의 일정 지역 수거 장소에 보관하면 쓰레기를 청소차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쓰레기 수거 방식은 재활용과 생활 쓰레기로 구분하고 자체 재활용 수거는 일정양이 되면 시에서 무상처리하고 생활 쓰레기의 경우 일반 가정 주택과 동일하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 유휴지 및 이면도로 청소는 청소기동반 2개반(8명)을 편성하여 매일 뒷골목, 주택가 공한지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동별로 순회 청소 및 시내 동지역 주요도로변 21개 지역에 청소가로반

(21명)을 편성하여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공흡입차량 (6m')으로 주요도로변 청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휴지(공한지)는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의2(청결유지조치 명령)규정에 의거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시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 제2항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청정자연과 청결한 도시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여 나가는데 노력 하겠습니다.